

## IP담보금융의 위험 구조와 법적 과제

김도경\*

### ◆ 목 차 ◆

- |                        |                      |
|------------------------|----------------------|
| I. 들어가며                | V. 비교법적 검토           |
| II. IP담보대출의 법적 구조      | 1. 미국                |
| 1. 특허권 질권의 설정          | 2. 영국                |
| 2. IP가치평가와 담보비율        | 3. 일본                |
| 3. 대출 실행의 법적 구조        | 4. 비교법적 시사점의 종합      |
| III. IP담보 실행의 법적 어려움   | VI. 입법론적 제언          |
| 1. IP담보대출의 현황과 구조적 특수성 | 1. IP담보 실행 제도의 개선    |
| 2. 질권 실행의 절차적 어려움      | 2. 회수지원기구의 법적 기반 강화  |
| 3. 회생·파산 절차에서의 IP담보    | 3. IP가치평가의 법적 신뢰성 제고 |
| 4. 소결                  | 4. 성과관리 법적 프레임워크의 도입 |
| IV. IP담보 회수지원기구의 법적 구조 | 5. 입법 우선순위와 이행 로드맵   |
| 1. 설립 경위와 법적 근거        | VII. 마치며             |
| 2. 운영 구조와 법적 성격        |                      |
| 3. 운영 실적과 법적 쟁점        |                      |
| 4. 제도적 한계              |                      |
| 5. 소결                  |                      |

\* 법무법인 제현 변호사/변리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중립인, 가치평가 전문위원

## I. 들어가며

국내 IP금융시장은 2018년 844억원 규모의 신규공급에서 2024년 8월 말 기준 잔액 10조 211억원으로 급속히 성장하였다.<sup>1)</sup> 특히 IP담보대출은 전통적 담보가 부족한 혁신 기업에 자금 공급의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기술금융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양적 성장의 이면에서 위험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IP담보금융(담보대출·담보부보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5%(2023년)에서 3.95%(2025년 3월)로 약 2년 내에 약 3.8배 상승하였으며,<sup>2)</sup> 일부 시중은행의 IP담보대출 연체율은 농협은행 10.7%, 부산은행 63.7%에 이르는 등<sup>3)</sup>심각한 리스크 상황에 진입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사고율

---

1) 특허청 보도자료, “지식재산(IP) 금융 10조원 시대 개막”, 2024. 10. 16. IP금융 잔액은 IP담보대출(2조 2,503억원), IP투자(3조 5,027억원), IP보증(4조 2,681억원)으로 구성된다. IP금융은 담보대출·투자·보증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며, IP담보금융은 담보방식 전반을, IP담보대출은 그 중 대출 상품만을 지칭한다. 즉, IP금융 ⊃ IP담보금융 ⊃ IP담보대출의 관계에 있다

2) 서울경제, “IP담보대출 부실률 4%…재산권 매입 늘린 특허청도 ‘진땀’”, 2025. 9. 3.(<<https://mv2.sedaily.com/NewsView/2GXRDCQZ1X/GD07>>). 서일준 의원(국민의힘) 국정감사 자료(2025년)에 기초한 이 보도에 따르면, IP담보대출 부실률은 2023년 1.05%, 2024년 3.71%, 2025년 3월 3.95%(846억원)이다. 같은 시기 국내 은행 전체의 고정이하여신비율(부실채권비율)이 0.53%(2024년 12월 말 기준)인 점에 비추어 보면, IP금융의 부실률은 은행 일반 대출 대비 약 7.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금융감독원, “2024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2025. 3. 25.;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Id=194437&menuNo=200218&cl1Cd=&sdate=&edate=&searchCnd=1&searchWrd=&pageIndex=1>> 참조). 한편, 비은행권 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6.8%(2024년 말 기준)에 이르고 있으나, 이는 부동산 PF 부실이 주요 원인이어서 IP금융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5. 3. 27.). IP금융의 3.95%라는 수치는 절대적 수준보다는, ① 2년 내 약 3.8배라는 상승 속도, ② 은행권 일반 대출 대비 현재저 높은 비율, ③ 공적 보증이 수반된 정책금융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최종 접속: 2026. 4. 22.)

3)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보도자료(2025. 10. 30)에 따르면, 주요 은행의

역시 2.5%(2021년)에서 5.5%(2025년 8월, 연환산)로 상승하였고, 구상채권 회수율은 7.9%(2022년)에서 3.8%(2025년 8월)로 하락하였다.<sup>4)</sup> 이러한 현상에 대한 분석은 주로 경제학적·금융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법적·제도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문제라는 관점에서의 체계적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국내 선행연구는 공시제도 분석,<sup>5)</sup> 담보 실행·우선순위 연구,<sup>6)</sup> 담보권 개선안,<sup>7)</sup> UNCITRAL 입법론 연구,<sup>8)</sup> 리스크 관리 분석,<sup>9)</sup> IP금융 인프라 프레임워크,<sup>10)</sup> 신탁구조 활용

---

IP담보대출 연체율은 농협은행 2.4%→10.7%, 하나은행 0.9%→5.3%, 부산은행 63.7%로 보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감자료실. 동 자료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세 데이터에 기초한 것으로,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6,023건, 3조 5,355억원의 IP담보대출이 승인되었으며, 주요 9개 은행의 연체율이 3-5배 이상 급등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최종 접속: 2026. 2. 27.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7&post=1215185>)

- 4) 이상욱, “김성원 ‘기술보증기금, 보증사고율 2배…성과 일변도 재검토해야’”, 로이슈(lawissue), 2025. 10. 1.자 보도(<[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1001230743141792eef753eb\\_12](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1001230743141792eef753eb_12)>). 동 보도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사고율은 2021년 2.5%에서 2024년 4.7%로 올랐고, 2024년 8월 기준 연환산 수치로는 5.5%까지 올랐다. 구상채권 회수율도 2022년 7.9%에서 2024년 5.5%로 떨어졌으며(이후 2025년 8월 기준 3.8%로 추가 하락; 본문의 2025년 8월 수치는 동 보도의 후속 발표에 의한 것이다), 상용화·사업화 성공률도 2020년 65.5%에서 2022년 53.6%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동 자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것이다.
- 5) 손승우·김태원, “지식재산 담보의 범위와 공시제도”, 지식재산연구 제8권 제3호, 2013, 34면.
- 6) 정창호, “지식재산담보권의 실행과 우선순위에 관한 개선안”, 지식재산연구 제8권 제4호, 2013.
- 7) 김태형, “지식재산권담보권의 문제와 그 개선방안”,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5권 제1호, 2021, 71-110면.
- 8) 박재원, “지식재산담보권의 우선권과 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연구 -UNCITRAL 담보거래 입법론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8권 제3호, 2013.
- 9) 윤종미, “은행권의 지식재산(IP) 담보금융에 관한 리스크 관리”, 경영법률 제33집 제2호, 2023, 73-98면.
- 10) 박유선, “국제개발 협력 측면에서 지식재산(IP)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8권 제3호, 2023, 39-74면.

연구,<sup>11)</sup> 정책효과 실증분석<sup>12)</sup> 등이 있으나, 이들을 “부실 급증”이라는 단일 현상의 법적 원인으로 통합 분석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해외에서는 IP담보금융의 제도적·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틀 제시,<sup>13)</sup> 미국의 특허담보 벤처대출 시장을 실증 분석<sup>14)</sup>이 있으나 한국 법체계의 고유한 특성인 민법상 권리질권 체계, 발명진흥법에 기반한 정책금융 구조, 기술보증기금 중심의 회수지원 메커니즘을 반영한 분석은 찾기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IP담보금융(특히 IP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다)의 부실 급증을 법적·제도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입법론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첫째, 부실의 원인을 ‘분리의 역설’이라는 독자적 개념으로 법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가치평가·거래시장 등 경제적 요인에 집중한 기존 연구와 달리 담보법제 자체의 결함을 규명한다. 둘째, 회수지원기구의 작동 실태를 구체적 실증 수치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평가한다. 회수지원기구의 회수율이 1% 미만(Ⅳ.3.다 참조)에 머무는 구조적 원인을 법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선행연구의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sup>15)</sup>. 셋째, 특허권

- 
- 11) 최철, “지식재산담보금융과 신탁구조 활용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제44권 제1호, 2020, 232-253면.
  - 12) 이은지·안현철,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정책효과 연구: 특허 포트폴리오 기반 지식재산 담보대출 중심으로”, Journal of KIIT 제22권 제8호, 2024, 153-164면.
  - 13) Heller, David / Leitzinger, Leo / Walz, Uwe, “Intellectual Property as Business Loan Collateral: A Taxonomy of Institutional and Economic Determinants”, GRUR International, Vol. 73, Issue 5, 2024, pp.379-392.
  - 14) Hochberg, Yael V. / Serrano, Carlos J. / Ziedonis, Rosemarie H., “Patent Collateral, Investor Commitment, and the Market for Venture Lending”,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130, Issue 1 (2018), pp. 74-94.
  - 15)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보재산권 매입·활용 사업의 누적 매입 실적은 307건(총 매입 비용 약 220억원)이며, 이 가운데 매각이 이루어진 건수는 7건에 그친다. 특히 2024년 매입이 151건으로 전체의 약 49%를 차지하여 매입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질권의 직접 실행에 관한 판례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현행 민법상 경매 절차의 경직성과 IP자산의 비유체성·가치변동성이 결합하여 담보 실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사적 실행의 부분적 허용, 특별환가절차 신설, 회수지원기구의 법률상 근거 확보,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도입을 시급성과 실현가능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배열한 입법 로드맵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은 특허권을 중심으로 한 IP담보대출의 법적 구조이며, 비교법적 검토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표권 등을 함께 다룬다. IP투자, IP보증 등 담보대출 이외의 IP금융 유형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현행 법령의 체계적 해석,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분석, 미국(UCC Art.9)·영국(IP charge, BBB)·일본(질권, 기업가치담보권)의 비교법적 검토, 통계 자료를 통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가 IP담보금융의 부실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IP담보금융 정책의 존재를 논하기 위함이 아니다. 담보 실행의 법적 인프라가 정비되면 부실 비용이 감소하여 정책의 순편익이 확대되고, 금융기관의 참여 유인이 강화되어 수혜 기업의 범위 자체가 확장될 수 있다는 인식 위에서,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한 IP담보금융 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 본 논문에서 ‘IP금융’은 IP를 매개로 한 모든 금융활동(담보대출·보증·투자)을 포괄하는 최상위 개념으로, ‘IP담보금융’은 이 중 IP를 담보로 설정하여 이루어지는 여신 전반(담보대출 및 담보부 보증)을 지칭하는 것으로, ‘IP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이 IP에 질권을 설정하고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형태로서, 본 논문의 직접적 분석 대상으로, 이하 본문에서는 문맥에 따라 세 용어를 구별하여 사

---

있다. 서울경제, 앞의 기사(각주 2). 동 보도는 특허청이 2020년 사업 시작 이후 매입한 IP 307개 중 매각 사례는 7건에 불과하여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용한다.

본 논문은 II 장(IP담보대출의 법적 구조), III 장(담보 실행의 법적 어려움), IV 장(회수지원기구의 법적 분석), V 장(비교법적 검토), VI 장(입법론적 제언), VII 장(결론)의 순서로 전개한다.

## II. IP담보대출의 법적 구조

### 1. 특허권 질권의 설정과 효력

#### 가. 권리질권의 법적 기초

IP담보대출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금융 형태이다. 그 법적 기초는 민법상 권리질권 제도에 있다. 민법 제345조는 “질권은 재산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체재산권인 특허권도 당연히 질권의 객체가 된다.<sup>16)</sup>

다만 특허권에 대한 질권 설정은 일반적인 동산질권과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를 갖는다. 동산질권은 목적물의 점유 이전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반면(민법 제330조), 특허권은 무형의 권리로서 물리적 점유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특허권에 대한 질권은 민법 제346조에 따라 특별법인 특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다.<sup>17)</sup>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IP담보

---

16) 민법 제345조(“질권은 재산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무체재산권인 특허권도 당연히 질권의 객체가 된다.

17) 민법 제346조는 권리질권의 설정방법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특허권의 경우 특허법이 특별법으로서 등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3호), 질권설정의 합의만으로는 질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의 본질적 특성을 규정한다. 유체물 담보에서 질권자가 점유를 통해 담보가치를 물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달리, IP담보에서는 담보 목적물에 대한 물리적 통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담보권자의 리스크 관리를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근본 요인이다.<sup>18)</sup>

## 나. 질권 설정의 요건과 절차

특허법 제121조는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질권 설정의 허용과 질권자의 실시 제한을 하나의 조문에서 동시에 정하고 있다. 또한 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3호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등록은 단순한 대항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한다.<sup>19)</sup>

이러한 등록주의는 담보 거래의 공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금융기관은 특허원부를 열람하여 선순위 담보권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질권 설정 등록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UNCITRAL 지식재산 담보지침을 분석하고, 공시된 권리관계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등록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sup>20)</sup> 예컨대, 프랑스 INPI 온라인 등록 저장소 도입(2006)

18) 윤종미, 앞의 논문(각주 9), 81-84면. IP담보금융에서 무형자산의 물리적 점유 불가능성이 담보가치의 물리적 통제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며, 이로 인해 담보권자의 리스크 관리가 유체물 담보에 비하여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분석하고 있다.

19) 특허법 제121조는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항 구분 없는 단일 조항). 동법 제101조 제1항 제3호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후 상표 담보화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는 실증 결과는, 공시 시스템의 접근성 개선이 IP담보 활성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sup>21)</sup>

현행 공시 체계에서는 특허원부 등록과 동산등기담보권 설정이 병존할 수 있어 담보권 간 우선순위의 불확실성이 발생한다.<sup>22)</sup> 이는 미국에서 연방 특허청 등록과 주(州) 차원의 UCC-1 신고가 병존 문제와 유사하다.<sup>23)</sup> 동일한 특허에 기초하여 특허원부에 공시되는 권리질권과 민법상 채권질권으로 설정되는 로열티 담보권, 그리고 실시권에 대한 질권이 각각 상이한 법적 근거와 공시 체계에 의하여 규율됨에도, 이들이 경합하는 경우의 우선순위를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규범이 없어 담보권 간 충돌의 가능성이 존재한다.<sup>24)</sup>

---

20) 손승우·김태원, 앞의 논문(각주 5), 52-53면, 34-57면.

21) Ciaramella, Laurie / Heller, David / Leitzinger, Leo, “Intellectual Property as Loan Collateral: Evidence from France”, Working Paper, Télécom Paris - Institut Polytechnique de Paris / Max Planck Institute for Innovation and Competition, 2022, p.4. 이 연구는 2006년 프랑스의 상표 정보 온라인 공개 시스템 도입이 대출 시장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중차분(DiD) 분석에 따르면, 경쟁도가 높은 기업은 낮은 기업에 비해 저장소 도입 12개월 내 상표 담보화 확률이 4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동 연구는 상표 담보를 대상으로 하며, 특허 담보에의 일반화에는 신중을 요한다(이중차분 분석(DiD(Difference-in-Differences)은 ‘정책의 영향을 받은 그룹’과 ‘영향을 덜 받은 그룹’의 변화를 비교하여 순수한 정책 효과를 추정하는 통계 방법을 말한다).

22) 김태형, 앞의 논문(각주 7), 71-110면.

23) 미국의 경우 연방 특허청 등록과 주(州) 차원의 UCC-1 financing statement 신고가 병존하여, 담보권의 공시(perfection) 요건이 IP 유형별로 상이하다.(<https://UCCStuff.com>), “IP Security Interests Outline” 참조(“A security interest in a federally registered patent may be perfected by filing a UCC-1 financing statement. However, many secured creditors elect to make a federal filing as well. The case law is confusing, to say the least.”).

24) 박재원, 앞의 논문(각주 8), 86, 92면.



#### 다. 질권의 효력 범위와 한계

특허법 제121조에 따라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이는 질권자(금융기관)가 담보목적물인 특허권을 직접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체물에 대한 질권에서 질권자가 목적물을 점유·보관하면서 담보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것과 대비되는 점이다.<sup>25)</sup> 질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해당 특허권에 미친다. 그런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약이 발생한다. 특허법 제99조는 공유 특허권의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에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정은 산학협력이나 공동개발이 활발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IP담보 활용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sup>26)</sup> 한편, 대법원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41578 판결에서 공유 특허권의 대금분할 경매를 허용한 바 있다. 이 판결은 민법상 공유물 분할 법리가 특허권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으나, 이는 공유자 간의 분할 청구에 관한 것으로서, 질권자의 담보 실행과는 법적 맥락이 상이하다.<sup>27)</sup>

한편, 담보가치의 보전에 관하여, 민법 제352조는 질권설정자의 담보목적물 훼손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특허법 제119조 제1항은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등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 없는 특허권 포기를 금지한다. 그러나 특허료 미납에 의한 특허권의 소멸(특허법 제81조 제3항: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은 제79조에 따

25) 특허법 제121조 후단은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26) 특허법 제99조 제2항(“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27)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공유 특허권의 대금분할 청구를 허용하여, 민법상 공유물 분할 법리가 특허권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판결이다.

라 낸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은 질권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질권자가 담보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수단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sup>28)</sup> 또한 특허법 제122조는 질권설정 이전에 이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질권 행사로 특허권이 이전되더라도 원특허권자에게 법정통상실시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규정은 원특허권자의 사업 지속을 보장하는 공익적 기능을 가지나, 반면 경매 시 경락인의 독점적 실시를 제한하여 환가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Heller 등이 EU 맥락에서 분석한 이 구조적 원인은 한국 은행건전성 규제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바젤Ⅲ 기준)에 따르면, 신용위험 표준방법에서 신용위험경감(CRM)을 인정받기 위한 ‘적격금융자산담보’는 현금, 금,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등급 이상의 채무증권, 주요 지수에 편입된 주식, UCITS/뮤추얼펀드 등으로 한정 열거되어 있다(CRE22.3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제2장 제6절). 지식재산권은 이 적격담보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근본적 원인은 적격담보가 갖추어야 할 핵심 속성인 ① 유동성: 시장에서 신속하게 처분 가능할 것, ② 가격투명성: 시장가격이 공개적으로 관찰 가능할 것, ③법적 실행가능성: 담보권의 적시 실행이 법적으로 보장될 것을 IP가 현행 제도 하에서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sup>29)</sup> 구체적으로, 특허권 등 IP는 공개거래시

28) 특허법 제119조는 특허권자가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특허권을 포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담보가치의 임의 훼손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료 미납에 의한 소멸(특허법 제81조 제3항)은 질권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한다. 참고로 제120조는 포기의 효과(소멸 시점)를, 제81조의3은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절차를 규정한다. 민법 제352조도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허료 납부의무 불이행에 의한 소멸에까지 적용되기는 어렵다.

29) Heller / Leitzinger / Walz, 앞의 논문(각주 13), pp. 379-392. 세 가지 요건(유동성·가격투명성·법적 실행가능성)은 CRE22.26-22.31의 일반 운용 요건(general

장이 없어 유동성이 극히 낮고, 가치평가가 개별 감정에 의존하여 가격투명성이 결여되며, 앞서 논의한 유질이 상법 제59조에 의해 허용되거나 은행의 특허 활용·처분 역량이 없어 실효성이 없고, UCC식 사적 처분 제도도 없어 담보권의 적시 실행가능성이 불확실하다. 그 결과 IP 담보대출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비율) 산출 시 무담보 익스포저와 동일한 위험가중치를 적용받게 되어, 은행으로서는 IP를 담보로 인정할 경제적 유인이 구조적으로 결여된다.

## 2. IP가치평가의 법적 효력

### 가. 가치평가의 제도적 기반

IP담보대출의 전제 조건은 담보목적물인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은 발명진흥법에 마련되어 있다. 동법 제28조는 지식재산처장이 발명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sup>30)</sup> 발명진흥법 제31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는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평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가치평가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sup>31)</sup> 그러나 현행 평가 제도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IP의 무형성, 가변성, 기술진부화 등으로 인하여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의 불확실성은 부동산 등 전통적 담보에 비해 현

---

operational requirements)과 CRE22.34 이하의 적격담보 목록에서 도출한 것으로 특정 단일 조항에서 열거된 것은 아니다.

30) 발명진흥법 제28조(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제1항은 특허청장이 발명 등의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1) 발명진흥법 제31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는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 평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저히 높다.<sup>32)</sup> 그에 따라 평가기관이 산출하는 가치평가 결과는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되지만,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따라서 평가 결과와 실제 담보가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더라도, 평가기관이 부담하는 법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도 어렵다.

#### 나. 평가 방법론과 신뢰성의 문제

IP 가치평가 방법론은 크게 소득접근법(income approach),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 비용접근법(cost approach)으로 구분된다. 소득접근법은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이며, 시장접근법은 유사 거래 사례를 기초로 가치를 추정하고, 비용접근법은 해당 기술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각 방법론은 IP담보 맥락에서 고유한 한계를 갖는다. 소득접근법은 미래 수익 예측의 주관성이 개입되어 동일 특허에 대하여도 평가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시장접근법은 IP거래 시장의 미성숙으로 유사 거래 사례 자체가 부족하며, 비용접근법은 개발비용과 시장가치 사이의 괴리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들 방법론 간 평가 결과의 편차에 더해, IP거래시장의 미성숙은 실행 시점의 가치 하락을 빈번히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평가 시점과 실행 시점의 가치 사이에는 구조적 괴리가 존재한다.<sup>33)</sup> 해외에서도 IP자산의 기술진부화(technological obsolescence)와 시장 트렌드 변화가 유동화의 주요 장애물이라는 지적과 함께 부동산과 같은 유체자산의 감정평가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불확실성이 내재해 있음이 분석된 바 있다.<sup>34)</sup>

---

32) 윤종미, 앞의 논문(각주 9), 73-98면.

33) 최철, 앞의 논문(각주 11), 232-253면.

이러한 한계는 IP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국발명진흥회(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이하 'KIPA')의 IP금융 연계 평가지원사업에서 평가비용은 보증·담보대출 연계 평가의 경우 건당 500만원, 투자 연계 평가의 경우 최대 1,200만원 이내이며, 정부가 상당 부분을 보조하고 있다(발명진흥법 제30조 참조). 평가 비용 자체가 이처럼 높은 것은, IP 가치평가가 표준화된 부동산 감정평가와 달리 고도의 기술적·산업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sup>35)</sup>

### 3. 대출 실행의 법적 구조

#### 가. 3중 평가 구조와 법적 책임

현행 IP담보대출의 실행 과정은 3단계의 평가를 거친다. 먼저 KIPA가 대출 신청 기업의 예비평가를 수행하여 IP금융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다음으로 발명진흥법 제28조에 의하여 지정된 가치평가기관이 해당 IP의 기술성·사업성에 대한 본평가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참여은행이 자체 여신심사기준에 따라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sup>36)</sup>

2024년 8월 말 기준 IP금융 잔액은 10조 211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IP담보대출은 2조 2,503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sup>37)</sup>

34) Khanna, Naina, "The Securitization of IP Assets: Issues and Opportun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Vol. 23(2-3), 2018, pp.94-100.

35) 특허청(지식재산처) IP금융 연계 평가지원사업 안내(2025년 기준)에 따르면, 보증·담보대출 연계 평가비용은 건당 500만원, 투자 연계 평가비용은 최대 1,200만원 이내이다. 발명진흥법 제30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6) 발명진흥법 제28조(평가기관 지정) 및 제32조의2(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의 실시)에 의한 3단계 구조이다.

37) 특허청, "IP금융 잔액 10조원 돌파 관련 보도자료", 2024. 10. 16. 2024년 8월말 기준

이러한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각 평가 단계에서의 법적 책임 배분은 명확하지 않다. KIPA의 예비평가에서 적격으로 판단된 기업이 이후 부실화되었을 경우, KIPA가 부담하는 법적 책임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행 법령상으로도 불분명하다. 이는 KIPA가 발명진흥법 제32조의2(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에 근거한 회수 지원기구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적격심사를 수행하는 이중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IP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에서, 평가의 신뢰성 확보와 평가기관 간 책임 배분 체계의 정비가 IP금융 활성화의 선결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특허 포트폴리오 기반의 담보대출 방식이 기업의 실제 혁신 역량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실증 분석에 따르면 단일 특허가 아닌 포트폴리오 단위의 평가로 전환할 필요성도 존재한다.<sup>38)</sup>

#### 나. 참여 은행의 법적 지위와 출연 구조

IP담보대출 사업에는 10개 시행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이 KIPA와 출연협약을 체결하여 참가하고 있으며, 광주·전북은행을 포함한 12개 은행이 정보제공·조회 협약 대상으로 넓은 의미의 참여은행을 구성한다.<sup>39)</sup> 이 출연협약의 법적 성격은 사법상 계약으로 해석되나, 정부(지식재산처)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서 통상적인 상사계약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참여

---

IP금융 잔액 10조 211억원(IP담보대출 2조 2,503억원, IP투자 3조 5,027억원, IP보증 4조 2,681억원)으로 보도되었다(특허청 보도자료 2024.10.16. 참조).

38) 박유선, 앞의 논문(각주 10), 39-74면.

39) 특허청, “IP담보대출 사업 운영 현황” 참조. 2024년 기준 시행은행(협약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 10개이며, 광주·전북은행을 포함한 12개 은행이 정보제공·조회 협약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특허청 공고 제2024-81호 참조).

은행은 출연협약에 따라 회수지원기금(이하 ‘기금’)에 출연금을 납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IP담보대출을 취급한다. 그러나 은행이 IP담보대출을 취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출연금의 반환 조건은 무엇인지 등의 세부 사항은 개별 협약의 내용에 의존하며, 법률 수준에서 규율되지 않고 있다. 발명진흥법 제32조의2는 참여은행의 권리·의무를 하위 규범에 위임하고 있다(IV.1.나에서 상세 분석).<sup>40)</sup> 이러한 법적 기반의 취약성은 IP담보대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구조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 다. 대출약정과 질권실행 조항

IP담보 대출약정서에는 통상적으로 채무불이행 사유, 기한이익 상실, 질권실행 방법 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은행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353조에 따른 직접청구권의 행사 또는 민법 제354조에 따른 민사집행법상 경매를 통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sup>41)</sup> 그러나 특허권에 대한 경매는 실무적으로 극히 드물다. 그 구조적 원인과 대안에 관하여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검토한다. 실무상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참여은행은 회수지원기구에 해당 부실채권과 담보 IP의 매입을 요청하는 것이 통상적인 처리 경로이다. 이러한 회수지원기구의 법적 구조와 운영 실태에 관하여는 IV장에서 분석한다.

40) 발명진흥법 제32조의2(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의 실시) 및 제32조의3(자금의 조성 등)이 회수지원기구의 법적 근거이다. 그러나 참여은행의 출연의무, 출연금 반환 조건, 대출취급 의무의 범위 등은 동법 시행령 및 개별 출연협약에 위임되어 있다.

41) 민법 제353조는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특허권에 설정된 질권의 경우 라이선스로 채권에 대한 직접청구권 행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민법 제354조는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한 질권 실행을 규정한다.

## 4. 소결

II 장의 분석은 IP담보대출의 법적 구조가 민법상 권리질권 제도를 특별법이 보충하는 중층적 체계이면서도, 공시의 이원화·직접 실시의 금지·가치평가의 법적 효력 미비라는 세 차원의 구조적 취약점을 내재하고 있음을 보였다. 그런데 이러한 취약점은 ‘설정’ 단계의 흠결에 그치지 않고, ‘실행’ 단계에서 담보권의 본래적 기능을 봉쇄하는 것으로 현실화된다. III장은 이 실행 단계의 구조적 어려움을, 민법상 질권 실행 수단의 작동 불능과 ‘분리의 역설’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 III. IP담보 실행의 법적 어려움

### 1. IP담보대출의 현황과 구조적 특수성

#### 가. IP담보대출 부실의 양적 확대

IP담보대출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실 또한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고,<sup>42)</sup> 같은 기간 주요 시중은행의 IP담보대출 연체율은 더욱 극단적인 양상을 보였으며,<sup>43)</sup>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사고율도 상승 추세, 구상채권 회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sup>44)</sup> 이러한 부실의 확대는 단순한 경기 변동의 산물로 환원될 수 없다. 그 기저에는 IP담보가 갖는 구조적 특수성,

---

42) 서울경제, 앞의 보도(각주 2).

43) 오세희 국회의원, 앞의 보도(각주 3).

44)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기초한다(로이슈, 2025. 10. 1. 보도(각주 4)).



즉 무형성(intangibility)·가치변동성(value volatility)·시장의 부존재(market absence)라는 세 가지 본질적 속성에서 비롯되는 담보 실행의 법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에 더하여 기술진부화, 소송 위험 등이 부동산 담보보다 훨씬 높은 다층적 리스크를 형성한다.<sup>45)</sup> 본 장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특수성이 담보 실행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적 어려움을 발생시키는지 분석한다.

### 나. 유체물 담보와의 질적 차이

IP담보대출의 부실이 통상적인 담보대출의 부실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담보 실행이 사실상 기능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유체물 담보(부동산·동산)의 경우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담보물의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확립된 경로이다. 부동산은 등기부를 통한 권리관계의 명확한 공시, 감정평가 기법의 표준화, 경매 시장의 활성화라는 세 가지 제도적 기반이 담보 기능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한다. 그러나 IP담보에서는 이 세 가지 기반이 모두 취약하다.

첫째, 앞서 II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특허원부와 동산담보등기부의 이원적 공시 체계로 인하여 담보권의 존부를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 IP 가치평가는 평가 방법론 간 결과의 편차가 크고, 평가 시점과 실행 시점 사이에 기술진부화에 의한 가치 급락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IP에 대한 경매 시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질적 차이이다. 유체물 담보에서 감가상각이 시간의 함수로서 예측 가능한 반면, IP담보에서는 무효심판에 의한 권리 자체의 소급적 소멸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가치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sup>46)</sup> 결국 IP의 낮은 전용가능성, 높은 평가비용, 높은 청산비용

45) 윤종미, 앞의 논문(각주 9), 73-98면.

46)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한 무효심판에서 무효가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

이 IP담보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한다. 특히 IP자산은 원 보유 기업의 사업전략 및 기술 로드맵과 깊이 결합되어 있어, 담보 실행으로 기업에서 분리된 IP는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sup>47)</sup> 이를 “분리의 역설(paradox of separation)”이라 부를 수 있다. 즉, 경매 실행 시 구조적으로 IP의 사업 맥락 분리가 수반되며, 현행 대안 경로들(유질, 임의매각, 회수지원기구 매입)은 실효성이 제한적이어서, 담보 실행 시점에 담보목적물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역설적 구조가 IP담보의 본질적 한계이다. 분리의 역설은 결국 우리법상 IP자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절차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 제도가 오히려 IP의 담보가치 하락을 촉진하는 데에서 생긴다. 담보를 실행하는 일과 기업을 살리는 일이 현행 법제 안에서 함께 가기 어려운 이상, 당사자끼리 합의로 풀어 보려 해도 이를 받쳐 줄 법적 장치가 없으면 IP담보는 적절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 다만 분리의 역설은 주로 중소기업 보유의 사업 특화 특허에 해당하는 현상이며, 5G와 같은 표준필수특허(SEP)는 FRAND 의무(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차별 없이(Non-Discriminatory))에 의해 기업 독립적 라이선싱 가치를 유지할 수 있고, 특허 사냥꾼과 같은 특허주장기업(NPE/PAE)이 운용하는 시장에서는 분리된 특허의 수익화가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 2. 질권 실행의 절차적 어려움

### 가. 민법상 질권 실행 방법과 특허권

민법은 질권의 실행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하나

---

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동조 제3항).

47) Heller / Leitzinger / Walz, 앞의 논문(각주 13), pp. 379-392.

는 민법 제353조에 의한 직접청구권(직접추심권)의 행사이고, 다른 하나는 민법 제354조에 의한 민사집행법상 경매이다.<sup>48)</sup> 먼저 민법 제353조의 직접청구권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질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허권에 설정된 질권의 경우, 이 규정은 해당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이 존재하여 실시료(로열티) 채권이 발생하고 있는 때에 적용될 수 있다. 질권자인 금융기관이 실시권자(제3채무자)에게 직접 실시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IP담보대출의 주요 차주인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를 타인에게 실시허락하여 실시료를 수취하는 구조보다는 자사 제품의 생산·판매에 특허를 직접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추심 대상이 되는 실시료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sup>49)</sup> 이 점에서 민법 제353조의 직접추심권은 IP담보의 실행 수단으로서 매우 제한적인 기능만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민법 제354조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한 질권 실행을 규정한다. 특허권은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에 해당하므로,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채권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sup>50)</sup> 대법원은 1968. 1. 30. 선고 67다2074 판결에서 선박의 공유지분과 같이 점유 이전이 어려운 재산에 대하여는 무체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이 취지는 선박 지분에 관하여는 현행 민사집행법 제185조 제1항에,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일반에 관하여는 동법 제251조에 각각 입법화되었다.<sup>51)</sup> 구

48) 민법 제353조(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54조(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49) 박재원, 앞의 논문(각주 8), 70-72면.

50) 민사집행법 제251조: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 관의 규정 및 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1) 대법원 1967. 11. 14. 선고 67다2074 판결. 선박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문제된 사안에서, 점유가 불가능한 무체재산권은 반드시 무체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체적으로는 법원의 압류명령 → 지식재산처에 대한 송달 → 등록원부에 압류 기입 → 환가(경매 또는 특별환가)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민사집행법 제241조는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등 법원이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를 명할 수 있는 특별환가방법도 규정하고 있다.<sup>52)</sup> 그러나 양도명령·매각명령은 이론상 특허권에도 적용 가능하나, 법원이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독자적으로 평가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적격 양수인을 법원이 독자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 있어, 실무에서 사실상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나. 특허권 경매의 구조적 한계

특허권에 대한 경매는 실무상 거의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그 구조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권의 가치평가가 극히 곤란하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감정평가사에 의한 표준화된 감정이 이루어지고, 시장 거래 사례가 풍부하여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이 비교적 용이하다. 반면 특허권은 II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소득접근법·시장접근법·비용접근법 간 평가 편차가 크고, 경매 시점에서의 기술적 진부화 정도, 잔존 권리 기간, 경쟁 기술의 출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실시간 가치 산정이 사실상 어렵다. 또한 IP거래시장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담보실행 후 담보물의 상용화에 문제가 발생하여 담보의 가치가 하락

---

방법에 따라야 하며, 유체동산 집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동 판결의 법리는 현행 민사집행법 제185조 제1항(선박 지분의 경우 제251조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을 통해 선박 지분 집행에 관하여 성문화되었으며, 나아가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무체재산권 일반의 강제집행 방법은 동법 제251조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52) 민사집행법 제241조: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제1항 제1호~제4호).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sup>53)</sup> 둘째, 경매 입찰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유체물의 경우 경매 시장에 다수의 잠재적 매수인이 참여하지만, 특허권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실질적인 실시 역량을 갖춘 소수의 기업만이 잠재적 매수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법정통상실시권(특허법 제122조, II.1.다 참조)에 의해 경락인의 독점적 가치가 훼손되어, 경매 참여 유인이 구조적으로 약화된다.<sup>54)55)</sup> 셋째, 정보의 비대칭이 경매 시장의 작동을 근본적으로 저해한다. 특허권의 기술적 가치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 없이는 판단이 불가능하며, 경매 절차에서 매수희망인에게 충분한 기술적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른바 “레몬 시장”의 전형적 양상을 보인다.<sup>56)</sup> 기술적 가치가 높은 특허는 기업이 부실화되더라도 자체적으로 매각하거나 라이선싱 협상을 진행하여 가치를 극대화하려 하는 반면, 경매에 나오는 특허는 역선택의 결과로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 IP담보 실증연구도 IP시장에서 정보 불완전성이 담보화의 핵심 장애물임을 확인하면서, 정보 공시 체계의 개선이 담보실행의 실효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sup>57)</sup>

53) 최철, 앞의 논문(각주 11), 232-253면.

54) 특허법 제122조: 특허권자(공유인 특허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 특허권의 분할청구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경매 등에 의하여 특허권이 이전되더라도 통상실시권을 가지되,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2021.10.19. 개정, 시행 2022.4.20.). 경락인의 독점적 실시를 제한하여 환가가치를 하락시키는 구조적 요인이다.

55) 정창호, 앞의 논문(각주 6), 76-79면.

56) Akerlof, George A.,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84, No. 3 (1970), pp. 488-500. 이 이론은 정보비대칭 하에서 시장의 역선택 메커니즘을 분석한 것으로, IP경매시장에도 직접 적용된다. 매수희망인은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판단할 전문성이 부족한 반면, 매도인은 정보 우위에 있으므로 시장가격이 하향 수렴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57) Ciarrella / Heller / Leitzinger, 앞의 논문(각주 21), pp. 9-13.

#### 다. 사적 실행의 실효성 결여

이처럼 경매가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적 실행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법 제339조는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IP담보대출의 피담보채권은 은행의 상행위(상법 제46조 제8호의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등)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상법 제59조에 의하여 유질약정이 허용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7499 판결 참조). 따라서 은행은 채무불이행 시 담보 특허권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유질 실행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유질의 허용이 곧 IP담보 실행의 실효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은행이 유질에 의하여 특허권을 취득하더라도, 해당 특허를 직접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할 사실적 역량이 없고(은행은 유질에 의하여 특허권자로서 법적으로는 실시가능하나, 기술 분야의 전문성 부재와 IP거래시장의 미성숙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환가를 달성하기 어렵다), 제3자에 대한 매각 역시 IP거래시장이 없어 곤란하다. 즉, 문제의 본질은 유질이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취득한 특허권을 환가할 수 있는 실효적 처분 메커니즘이 없다는 데에 있다. 이 점에서 미국 UCC Art.9가 규정하는 사적 처분(private disposition, § 9-610)은 유질과 구별되는 제도로서, 담보권자가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검토의 실익이 있다.

미국의 UCC Art.9은 이러한 유질(strict foreclosure)에 더하여, 담보권자가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 reasonableness) 기준을 충족하는 한 담보물을 제3자에게 사적으로 처분(private disposition)할 수 있는 경로를 허용하고 있다.<sup>58)</sup> 그러나 사적 실행의 허용이 IP담보의 어려움을 전

---

58) 미국 UCC § 9-610 이하: 담보권자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commmercially

면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에서도 상표와 영업적 신용(goodwill)의 불가분적 결합 등 IP 유형별 고유의 법적 장애가 보고되고 있다.<sup>59)60)</sup> UCC Art.9의 사적 실행 체계의 구체적 구조와 한국법예의 시사점은 V 장에서 상세히 분석한다.

유질이 상법 제59조에 의하여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환가수단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 실무상 IP담보의 실행은 채무자와의 합의에 의한 임의매각(협의매각) 또는 회수지원기구에 대한 매입 요청이라는 비공식적 경로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는 부실 기업과의 협상이라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후자는 회수지원기구의 예산과 역량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회수지원기구의 법적 구조와 한계에 관하여는 IV 장에서 상세히 분석한다.

## 라. 대법원 판례

주목할 것은, 특허권에 설정된 질권의 직접 실행을 다룬 대법원 판례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sup>61)</sup> 이 판례가 없는 원인에 관하여는 복

reasonable) 방법으로 처분하는 한 사적 처분이 허용된다. UCC § 9-620 내지 § 9-624는 직접 인수의 요건을 규율한다. [UCCStuff.com](https://UCCStuff.com), “IP Security Interests Outline” 참조.

59) 김태형, 앞의 논문(각주 7), 71-110면.

60) Werbin, Barry, “How to Enforce U.S. Security Interests in Trademarks”, INTA Bulletin, Vol. 72, No. 6. 상표권은 영업적 신용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담보권자가 상표를 분리하여 사적 실행하는 것에 법적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goodwill은 회계상 영업권(기업결합 시 이전대가가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 K-IFRS 제1103호)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상표에 체화된 고객 신뢰·시장 평판 등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에 수반되는 무형적 신용을 의미한다. 미국 연방상표법(Lanham Act, 15 U.S.C. § 1060(a)(1))은 상표의 양도 시 goodwill과 함께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상표를 goodwill로부터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61) 본 연구의 판례 검색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데이터베이스, 로앤비에서 “특허권 AND 질권 AND 경매”, “지식재산 AND 담보 AND 실행”, “특허 AND 질권자 AND 환가”, “특허권 AND 민사집행” 등의 키워드 조합으로 검색

수의 가설이 가능하다. 첫째, 현행 담보법 체계가 IP의 특수성에 부적합하여 실행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하 “법적 장애 가설”), 둘째,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에 의하여 대부분의 부실이 해결되므로 질권 실행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설명, 셋째, 채무자와의 임의매각·협상에 의하여 사적으로 해결된다는 설명, 넷째, IP담보대출이 2018년 이후 본격화되었으므로 판례 축적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둘째 가설은 판례의 ‘불필요’ 이유만 설명할 뿐, 금융기관이 왜 자력 회수를 시도하지 않는지를 해명하지 못한다. 보증 커버리지가 100%가 아닌 이상 합리적 채권자는 자력 회수를 병행하여야 하나, 실무상 그러한 시도가 없다는 사실은, 질권 실행의 구조적 장애가 미보증분에 대한 실행 비용조차 정당화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셋째 가설 역시 경매의 비현실성을 전제로 한 차선책에 불과하며, 만약 경매가 실효적으로 작동한다면 채권자가 임의매각에 의존할 유인은 크지 않다. 넷째 가설은 부분적 설명력을 갖지만, IP담보대출의 부실률이 이미 3.95%에 이르고 부실 건수가 상당히 축적된 현 시점에서 단 한 건의 판례조차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시간의 부족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결국 이들 대안적 가설은 판례가 없는 현상의 부수적 원인은 될 수 있으나, 주된 원인은 현행 담보법 체계의 구조적 부적합

---

하였다. 검색 기간은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최종 검색일은 2026. 2. 27.이다. 그 결과, 특허권에 설정된 질권의 실행(경매를 통한 환가)을 직접적 쟁점으로 다룬 대법원 확정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급심(지방법원·고등법원) 판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키워드로 검색하였으나, 관련 사건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하급심 단계에서도 질권 실행이 소송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이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허권의 공유물분할에 따른 대금분할 경매를 명한 판례(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는 존재하나, 이는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것으로 질권 실행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학술 문헌에서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그다지 활발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도 IP자산의 경매 활용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인 경매의 비현실성, 사적 실행의 실효적 한계, 감정평가의 곤란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할 때, 판례가 없다는 사실은 단순히 해당 사건이 소송으로 발전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IP 질권의 실행이 실무상 사실상 불가능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조차 되지 않거나, 임의매각·회수지원기구 매입이라는 비사법적(非司法的) 경로로 처리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특허권 질권의 실행에 관한 판례는 극히 드물며, 이는 한일 양국에서 특허권 질권 제도가 “설정은 가능하나 실행은 불가능한” 제도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sup>62)</sup>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41578 판결은 공유 특허권에 대한 대금분할 경매를 허용함으로써 특허권의 환가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였다.<sup>63)</sup> 그러나 이 판결은 공유자 간의 분할 청구에 관한 것으로서, 질권자의 담보 실행과는 법적 맥락이 상이하다. 또한 동 판결이 공유 특허권의 경매가 “가능하다”는 법리적 판단을 내린 것과, 경매가 실무상 실효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실제로 경매에 나온 특허권의 유찰 가능성과 헐값 처분 위험은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

62) 일본에서도 특허권 질권의 실행에 관한 판례는 극히 드물며, 금융기관은 공시·풍평(風評) 리스크(부정적인 평판 리스크)로 인해 질권 설정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2024년 제정된 기업가치담보권 제도는 이러한 개별 질권의 한계를 포괄 담보 방식으로 우회하려는 입법적 대응으로 평가된다(企業価値担保権に関する法律, 2026. 5. 25. 시행). WIPO, Country Perspectives: Japan's Journey, Unlocking IP-backed Financing Series, RN2025-2/EN, 2025, pp. 6, 10-12. JPO가 FY2014에 조사한 26건의 특허권 질권 집행 사례 가운데 FY2015 이후 활용 사례가 사실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된다..

63) 앞의 판결(각주 27).

### 3. 회생 · 파산 절차에서의 IP담보

#### 가. 회생절차와 담보권 실행의 충돌

IP담보대출의 차주인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재무적 위기에 처하여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담보권자인 금융기관은 이중의 딜레마에 직면한다.

청산형 도산절차에 해당하는 파산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411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에게 별제권을 인정한다. 별제권자는 원칙적으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sup>64)</sup> 그러나 재건형 도산절차에 해당하는 회생의 경우, 동법 제44조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5조의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포괄적으로 금지될 수도 있다.<sup>65)</sup> 나아가 동법 제61조는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재산 처분행위에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어, DIP(Debtor-in-Possession) 체제 하에서도 핵심 기술자산의 처분에는 별도의 사법적 통제가 가해진다.<sup>66)</sup>

---

6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위에 존재하는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6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및 제45조(포괄적 금지명령). 제44조는 개별 절차의 중지를 명하는 법원의 재량 규정이며, 제45조의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라는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발령되는 것으로, 양자의 발령 요건과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제44조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나아가 제45조에 의하여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도 있다.

문제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경우 핵심 특허가 곧 기업의 존재 이유이자 회생의 유일한 기반이라는 점이다. 담보권자가 특허권에 설정된 질권을 실행하여 특허를 제3자에게 이전시키면, 기업은 핵심 기술 자산을 상실하여 회생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반면 담보권 실행을 무기한 중지하면, 그 기간 동안 기술진부화에 의한 특허 가치의 하락이 진행되어 담보권자의 손실이 확대된다. 이러한 구조적 딜레마는 부동산 담보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IP 고유의 문제이다. 부동산은 기업에서 분리되어도 독자적인 교환가치를 상당 부분 유지하지만, 특허권은 기업의 사업 역량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 분리 시 가치가 급락하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1.나.에서 정의한 “분리의 역설”이 도산절차의 맥락에서 가장 첨예하게 현실화되는 국면이라 할 수 있다.

## 나. 파산 시 담보물 소멸의 위험

파산절차에서 IP담보권자가 직면하는 보다 근본적인 위험은 담보물 자체의 소멸이다. 앞서 II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특허권은 특허료 미납에 의하여 소멸할 수 있다(특허법 제81조 제3항)<sup>67)</sup> 파산관재인이 특허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특허 연차료의 납부를 방지할 경우, 담보권자가 별채권을 행사하기도 전에 담보목적물이 소멸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특허권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 그 효력은 출원일로 소급하여, 해당 권리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된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3

6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관리인이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등을 하고자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회생절차 하에서 핵심 IP자산의 처분에 사법적 통제가 가해지는 근거이다.

67) 특허법 제81조 제3항은 추가납부기간까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특허권은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질권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므로, 파산관재인의 부작위에 의하여 담보물이 소멸할 수 있다.

항).<sup>68)</sup> 이 경우 금융기관이 설정한 질권의 목적물 자체가 근원적으로 소멸하므로, 담보부 채권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고 일반 회생채권자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유체물 담보에서는 상정하기 어려운, IP담보 고유의 극단적 리스크이다.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는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예외적 상황에 한정되지만, 특허권의 법적 소멸은 무효심판 제기, 연차료 미납 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 다. 대물변제와 실무적 관행

경매의 한계로 인해 실무에서는 대물변제 또는 회수지원기구 매입에 의존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특허 활용 역량 부족과 저조한 수익화 실적(Ⅳ.3.다 참조)은 실행 구조의 한계를 보여준다(은행의 특허 활용·처분 역량 부재에 관하여는 Ⅱ.1.다(Basel III 적격담보 논의) 및 Ⅲ.2.다(유질의 실효성 결여)의 분석을, 통계 근거는 각주 15 참조). 이는 “분리의 역설”이 실행 단계에서 현실화된 결과이다.

### 4. 소결

Ⅲ장의 분석은 IP담보 실행이 ‘분리의 역설’을 축으로 ① 실행 수단의 실효성 부족, ② 담보물 가치의 구조적 불안정성, ③ 도산절차에서의 이해충돌이라는 세 차원에서 법적으로 봉쇄되어 있음을 규명하였다. 그렇다면 이 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이 마련한 독자적 제도인 회수지원기구는 과연 실효적으로 기능하고 있는가. Ⅳ장은 이 물

---

68) 특허법 제133조 제1항(무효심판), 제3항(소급효: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무효가 확정되면 해당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어, 이에 기초한 질권도 목적물 소멸로 실효된다.

음에 답하기 위해 회수지원기구의 법적 성격·수권 구조·수익화 실적을 차례로 검토한다.

## IV. IP담보 회수지원기구의 법적 분석

이에 한국은 IP담보대출의 부실 채권을 공적 기구가 매입하여 회수하는 독자적 제도를 마련하였다. WIPO(2025)에 따르면 글로벌 IP담보 금융은 여전히 주류 금융기관의 참여가 미흡한 상황이다.<sup>69)</sup> 이러한 국제적 맥락에서 한국의 회수지원기구는, 민간 NPL(Non-Performing Loan) 시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IP담보 영역에서 정부가 ‘최종 매수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로서, IP담보 부실채권에 특화된 최종 매수인 기능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정부 연계 기구로서는 국제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책이다. 본 장에서는 이 회수지원기구의 법적 성격, 거버넌스 구조, 매입·수익화 메커니즘, 그리고 제도적 한계를 법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 1. 설립 경위와 법적 근거

#### 가. 정책적 배경과 설립 과정

회수지원기구의 설립은 IP담보대출의 확대에 수반되는 부실 리스크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서 추진되었다. 2018년 5월 금융위원회의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이 발표된 이후, 같은 해 12월 특허청·금융위

---

69) WIPO, “Moving IP Finance from the Margins to the Mainstream”, 2025. IP금융이 여전히 니치 시장에 머물러 있으며, 표준화된 가치평가 방법론이 없다는 점이 IP금융 확대의 핵심 장애라고 지적한다.

원회의 '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에서 회수지원기구의 설치가 공식적으로 제안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KIPA와 참여은행 간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2019년 12월 특허청 고시로 관련 운영 규정이 제정되어 KIPA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회수지원기구는 2020년 2월 공식 출범하여 운영을 개시하였다.<sup>70)</sup> 이러한 설립 과정은 법률의 제정이 아닌 행정적 조치의 축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동산·부동산 담보의 경우 부실채권의 매각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하여 처리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같이 법률에 직접적 근거를 둔 기관이 담당한다. 반면 IP담보 회수지원기구는 양해각서와 지식재산 처 고시라는 하위 규범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법적 안정성에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 나. 법적 근거의 취약성

회수지원기구의 법적 근거는 발명진흥법 제32조의2(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의 실시)에 있다. 동 조항은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게 된 산업재산권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71)</sup> 그러나 이 규정은 회수지원기구의 법적 성격, 권한의

---

70) 특허청·금융위원회, “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2018. 12. (회수지원기구의 설립 경위와 운영 계획이 발표된 정책문서), 이은지·안현철, 앞의 논문(각주 12), 153-164면, 김현아,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 특허청 국외 훈련검토보고서, 2020.1. 참조동 대책에 따르면 2013-2017년 기간 중 4개 선행 회수 지원펀드가 조성되었으나(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주) GP, IP 매입 약정액 100억원 대비 실제 매입액은 35.3억원에 그쳤고 매입 IP의 수익화 사례는 0건이었다. 또한 2013-2018년 IP담보대출 4,057억원 중 정책금융기관(KDB·IBK) 외 민간은행 참여가 사실상 부재하여, 선행 회수지원펀드 메커니즘의 구조적 한계가 확인된 바 있다 (특허청, 2019.06.04. 보도자료)

71) 발명진흥법 제32조의2(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의 실시, 2019. 4. 23. 신설). 제32조의3(자금의 조성 등)은 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을 규정한다.

범위, 참여 주체의 권리·의무, 출연금의 법적 성격, 매입 대상의 선정 기준 등 핵심적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이들 사항은 모두 지식재산처 고시와 KIPA 내부 지침, 그리고 KIPA와 참여 은행 간 출연협약에 위임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두 가지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수권 규정의 불충분성이다. 발명진흥법 제32조의2의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만으로는 공적 재원을 투입하여 부실 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한 특허를 제3자에게 실시허락하며, 수익을 배분하는 일련의 복잡한 법률관계를 규율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전담기관의 이중적 지위에 의한 이해상충 가능성이다. KIPA는 IP금융 연계 평가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대출 적격 기업의 예비평가를 수행하는 동시에, 회수지원기구의 전담기관으로서 부실 채권의 매입 결정에도 관여한다. KIPA가 적극적으로 평가한 기업의 대출이 부실화되었을 경우, 회수지원기구로서의 매입 결정에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sup>72)</sup> 이는 IP담보대출의 3중 평가 구조에서 KIPA가 예비평가 단계와 부실 회수 단계를 모두 관장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II장에서 분석한 법적 책임 배분의 불명확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72) KIPA의 발명진흥법 제28조 평가기관 지정·관리권과 제32조의2 매입전담기관 지위의 실질적 이중지위는 2020.2.18. IP담보 회수지원기구 출범일부터 2023.6.28. KIPA의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자진취소일까지 약 3년 4개월간 존속하였다(특허청,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취소 고시」, 2023.6.28.). 특히 특허청고시 제2019-22호(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KIPA를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을 전담기관 규정함으로써, 평가기관 게이트키퍼와 매입주체라는 구조적 이해상충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였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정태호 의원은 KIPA의 15억원 이상 평가비율이 53.4%로 민간평가기관 평균의 3배를 상회한다고 지적하였고, 이후 KIPA의 자진 지정취소로 형식적 해소가 이루어졌으나 전담기관 지위는 존속하므로 입법적 이해상충 방지 장치의 필요성은 유효하다(전자신문, 「한국발명진흥회 IP 평가 과대평가 지적」, 2021. 10. 7., <https://www.etnews.com/20211007000094> (최종접속 2026. 4. 22)).

## 2. 거버넌스와 출연금 구조

### 가. 다층적 법률관계의 구조

회수지원기구의 거버넌스는 세 개의 주체, 지식재산처(정부), KIPA(전담기관),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주식회사(회수전문기관)와 12개 참여은행 간의 다층적 법률관계로 구성된다. 정부(지식재산처)와 12개 참여은행은 공동으로 회수지원기금에 출연한다. 이 출연 행위의 법적 성격은 사법상 계약으로 해석되나, 정부의 정책 목적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상적인 상사계약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출연금의 총 규모, 출연 비율, 반환 조건 등은 KIPA와 각 참여은행 간 출연협약에 의하여 정해지나, 이러한 핵심 사항이 법률이 아닌 계약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는 것은 제도의 안정성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sup>73)</sup>

KIPA는 전담기관으로서 회수지원기금을 관리하고, 매입 대상 선정의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 한편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주)는 KIPA와의 협약에 따라 회수전문기관으로 선정되어, 매입한 IP의 수익화 업무를 수행한다. 회수전문기관의 선정과 관련하여,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가 특허의 라이선싱 및 권리행사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공적 기구의 목적(부실 IP의 효율적 처분)과 회수전문기관의 사업적 유인(라이선스 수익 극대화) 사이에 잠재적 긴장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sup>74)</sup> 나아가 이 구조에서 매입 결정의 최종 주체가 누구인지, 매입 거

---

73) 발명진흥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은 회수지원기구의 운영·자금 근거를 두고 있으나, 참여은행의 권리·의무에 관한 구체적 규율은 법률이 아닌 출연협약(사적 계약)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박유선, 앞의 논문(각주 10), 39-74면. IP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 체계, 회계 기준, 평가 방법론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74) 회수전문기관의 선정 기준 및 법적 자격 요건이 특허청 고시 또는 KIPA 내부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적 기구의 수익화 목적과 회수전문기관의 사업적 유인 간의 잠재적 긴장 관계에 대한 법적 규율은 명확하지 않다.



부 시 은행의 구제 수단이 있는지, 회수전문기관의 독립적 의사결정 권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한 법적 규율이 명확하지 않다.

#### 나. 출연협약의 법적 쟁점

출연협약은 참여은행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IP담보대출을 취급 하도록 유도하면서, 부실 발생 시 회수지원기구가 매입하는 구조의 법적 기반이다. 그러나 참여은행이 IP담보대출을 취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출연금의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출연금 소진 시 추가 출연의 의무가 존재하는지 등의 쟁점은 개별 협약의 해석에 좌우된다.<sup>75)</sup> 특히 은행의 출연금이 공적 성격의 기금에 편입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종의 보험료적 성격을 갖는 것인지에 따라, 출연금에 대한 세법상 취급, 출연 은행 간의 형평성, 기금 잔액에 대한 권리 등의 법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무형자산 금융의 구조적 공백으로 인해, 정책 개입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그 제도적 설계가 시장 기능을 왜곡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sup>76)</sup>

### 3. 매입과 수익화의 법적 구조

#### 가. 매입 프로세스와 법적 성격

IP담보대출의 차주가 채무불이행에 이르면, 참여은행은 회수지원기구에 매입을 요청한다. 회수지원기구는 해당 IP의 가치를 재평가한 후,

75) II 장 3.나.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참여은행의 출연협약의 법적 성격은 사법상 계약으로 해석되나, 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서 통상적인 상사계약과 성격을 달리한다.

76) Demmou, Lilas / Franco, Guido, "Mind the financing gap: Enhancing the contribution of intangible assets to productivity",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681, OECD, 2021. OECD차원에서 무형자산의 금융 공백을 실증하면서, 정책 개입의 필요성과 함께 그 설계의 정밀성을 강조한다.

최초 약정된 일정 비율의 가격으로 담보 특허권과 부실 채권을 매입한다. 회수지원기구는 참여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받는 동시에, 차주로부터 대물변제 또는 합의양도 방식으로 담보 특허권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수익화하는 구조로 이해된다. 2024년까지의 누적 매입 실적은 307건, 약 220억원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특히 2024년 단년도 매입이 151건으로 전체의 약 49%를 차지하여 매입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sup>77)</sup> 이는 IP담보대출 부실률의 상승(2025년 3월 기준 3.95%)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매입 규모의 급증이 회수지원기금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매입가 결정의 법적 기준은 핵심적 쟁점이다. 도덕적 해이의 근본 원인은 회수지원기구에 의한 매입 기대 자체(묵시적 풋옵션)가 자체 심사 유인을 감소시키는 구조에 있으며, 매입가 비공개에 의한 예측 곤란은 이를 증폭시키는 촉진 요인이다. 매입가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면 은행의 자체적 심사·관리 유인이 더욱 약화되어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고,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면 은행의 참여 유인이 저하된다. 현재 매입가는 KIPA 내부 지침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상한(은행 대출 손실의 최대 50%)은 공표되어 있으나 세부 산정 공식이 비공개이어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sup>78)</sup>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 비투명성에 그치지 않는다. 매입가 산정기준의 비공개는 참여은행이 사전에 회수 가능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이는 은행으로 하여금 자체적 리스크 관리보다 회수지원기구에의 의존을 합리적 선택으로 만드는 구조적 유인을 형성한다. 결국 매입가 세부 산정 공식의 비공개→예측가능성 저하→자체 리스크관리 유인 약화→도덕적

77) 서울경제, 앞의 보도(각주 2).

78) 최철, 앞의 논문(각주 11), 16면. 금융위원회, 특허청 2018.12.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17, 18면.

해이라는 인과적 연쇄가 작동하며, 이는 III장에서 분석한 담보 실행의 구조적 작동 한계와 맞물려 부실의 재생산 구조를 형성한다.

## 나. IP-SLB(매각 후 실시허락)의 법적 구조

회수지원기구가 매입한 특허의 수익화 방법 가운데 주목할 것은 IP-SLB(Sale and License Back, 매각 후 실시허락)이다. IP-SLB는 회수지원기구가 매입한 특허를 원래의 특허 보유 기업(채무불이행 기업)에게 다시 실시허락하고, 경상실시료를 징수하는 구조이다. 지식재산처은 이를 “매각 후 실시(SLB)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로 회생절차 중인 기업이 SLB 프로그램을 통해 담보IP에 대한 실시권을 확보하고 사업을 지속하여 경영을 정상화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 계약의 법적 성격은 매매와 실시허락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sup>79)</sup> 회수지원기구가 특허권을 취득하는 단계는 매매(또는 채권양수에 수반하는 특허권 이전)이고, 원 기업에게 실시를 허락하는 단계는 통상 실시권 설정계약의 성격을 갖는다. 다만 수익화 실적은 제한적이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SLB 실시료 수입은 누적 약 1억 300만원에 그치고 있다. IP-SLB에는 이러한 실효성 문제와 함께 고유한 법적 쟁점이 존재한다.

첫째, SLB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법적 안정성이다. SLB 프로그램에서 원 기업에 부여되는 통상실시권의 기간은 2+2년(최대 4년)으로 설정되

79) 특허청 보도자료, “지식재산으로 재도약을 꿈꾸다! 담보 IP ‘매각 후 실시(SLB)’ 지원 기업”, 2025. 1. 16. 소프트웨어 기업 A사는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으로 2022년 법원 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SLB 프로그램을 통해 담보IP를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 경영 정상화에 성공하였으며, (주)파워보이스는 담보 특허 5건을 매각하고 SLB 프로그램으로 실시권을 확보하여 사업을 지속,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IPDaily, “회생기업 정상화에 ‘담보IP’ 활용... ‘매각 후 실시(SLB)’ 프로그램”, 2025. 1. 17.자 보도도 동일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어 있으며, 3~4년차의 연장 여부는 회수지원기구가 IP수익화 계획 등에 따라 결정한다. 실시료 수준 역시 기존 대출이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기업 회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은 파워보이스 사례 등에서 확인된다.<sup>80)</sup> 그러나 SLB 계약의 핵심 조건인 실시 기간의 연장 여부와 재매입 우선권의 행사 조건이 회수지원기구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구조는, 원 기업의 사업 계속에 관한 법적 예측 가능성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특히 통상실시권의 기본 기간(2년)이 만료된 후 연장이 거부되거나, 5년 이후 제3자에게 수익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 기업은 핵심 기술에 대한 실시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SLB가 기업 회생을 지원하는 과도적 제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회생 상태가 지속되는 한 실시권이 유지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매입 IP의 제3자 실시허락 권한의 범위이다. 회수지원기구가 매입한 특허를 원 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실시허락하는 경우, 원 기업은 핵심 기술에 대한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는 원 기업의 사업 기반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으나, 현행 발명진흥법 및 특허법에는 회수지원기구가 매입한 특허의 제3자 실시허락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sup>81)</sup> 특허법 제121조가 질권자의 특허 실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과 대비하면, 매입에 의하여 특허권 자체를 취득한 회수지원기구는 소유자로서 실시허락에 대한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 구조이다.

#### 다. 수익화 실적의 법적 함의

회수지원기구의 수익화 실적은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

---

80) 특허청, 위 보도자료.

81) 발명진흥법 및 특허법에는 회수지원기구가 매입한 특허의 제3자 실시허락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누적 수익화 실적은 계약 기준으로 매각 약 5,300만원, SLB 실시료 약 1억 300만원, 통상실시료 약 5,180만원을 합산하여 총 약 2억 780만원에 이르고, 입금 기준으로는 약 1억 8,010만원인 것으로 파악된다.<sup>82)</sup> 307건 · 약 220억원 매입 대비 수익화 2억원 · 매각 7건이라는 실적은, ‘분리의 역설(Ⅲ.1.나)’이 공적 매입 단계에서도 재생산됨을 실증한다.<sup>83)</sup>

지식재산권은 IP거래시장의 미성숙과 가치변동 등 무형자산의 내재적 리스크로 인하여, 부동산 등 전통적 담보물에 비하여 채권 회수의 불확실성이 훨씬 크다.<sup>84)</sup> 한국 회수지원기구의 1% 미만 회수율은, IP를 독립적 담보물로 취급하는 현행 법적 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비단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BBB(British Business Bank)와 UKIPO의 공동 연구는, 영국 EFG(Enterprise Finance Guarantee) 프로그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IP보유 기업의 부도율(10%)과 손실률(4%)이 비IP기업(각 16%, 8%)보다 유의미하게 낮음을 밝혔다. 그러나 동 보고서는 IP의 낮은 부도율이 곧 담보적 가치의 실현 가능성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지적한다. 그 구조적 장벽인 Basel III 적격담보 배제(Ⅱ.1.다), 기업으로부터의 분리 곤란, 가치평가의 미합의, 유통시장 부재는 영국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이는 IP가 기업의 신용도를 높이는 신호로는 기능하되, 채무불이행 시 독립적으로 환가할 수 있는 담보물로서는 기능하기 어렵다는, Ⅲ장에서 분석한 “분리의 역설”과 정확히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sup>85)</sup>

82) 특허청 국정감사 자료 및 관련 보도(각주 2, 15)를 종합한 것이다. 수익화 실적의 구체적 내역인 매각 약 53백만원, SLB 실시료 약 103백만원, 통상실시료 약 51.8백만원은 계약 기준이며, 실제 입금 기준으로는 약 180.1백만원으로 보도되고 있다.

83) 회수지원기구의 “307건 매입, 7건 매각”이라는 수치는 Ⅲ장 2.에서 분석한 IP담보 실행의 구조적 한계가 회수 단계에서도 그대로 반복됨을 보여주는 실증적 근거이다.

84) 윤종미, 앞의 논문(각주 9), 73-98면.

## 4. 제도적 한계와 법적 과제

### 가. 구조적 위험

회수지원기구의 매입 기대는 참여은행의 심사·사후관리 유인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킨다. 따라서 IP담보대출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자체적 심사 역량 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sup>86)</sup> 이러한 구조적 위험은 2024년 매입 건수의 급증(전체 누적의 49%)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매입 규모의 급격한 확대가 IP담보대출 시장의 확장에 따른 자연적 결과인지, 아니면 은행의 심사 기준 완화에 의한 부실증가의 결과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제도 평가의 핵심 과제이다. 한국 회수지원기구의 1% 미만 회수율은, IP를 독립적 담보물로 취급하는 은행 법적 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회수지원기구의 IP매입이 사실상 회수를 전제로 한 자산취득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손실을 공적 재원으로 보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87)</sup> 비슷한 예로 싱가포르 IPFS(2014-

---

85) BBB & UKIPO, “Using Intellectual Property to Access Growth Funding”, British Business Bank and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18, pp. 14-17, 22-23. 영국의 EFG(Enterprise Finance Guarantee) 프로그램 참여기업 대출 데이터(2009. 4.-2016. 3.)를 IPR 보유 여부와 매칭하여 분석한 보고서이다. IPR 보유 기업의 부도율은 10%, 손실률은 4%로, EFG 전체 평균(각 16%, 8%)보다 유의미하게 낮았으며(Chi-Squared 검정 95% 유의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기업 연령·업종·대출 규모 등 통제 후에도 유의), 특허 보유 기업은 부도율 6%, 손실률 3%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동 보고서는 Basel III 규제, 법적 집행의 난이, 가치평가 방법론 미합의, 유통시장이 없다는 점을 IP 담보 활용의 4대 장벽으로 지적하고 있다. 다만 이 분석은 EFG 프로그램 참여 기업이라는 선택적(self-selected) 모집단에 한정된 것으로, 정부 보증을 매개로 대출이 실행된 기업군이므로 일반 기업 대출 모집단과는 체계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86) 이은지·안현철, 앞의 논문(각주 12), 160면. 정부 및 은행권의 기술금융 및 지식재산금융 제도가 실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자체의 심사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분석한다.

2018)는 정부와 민간의 80:20 손실 분담 구조에도 4년간 3건만 실행된 채 종료되었는데, 이는 리스크 분담 설계만으로 금융기관의 IP 평가 역량 부족이라는 수요 측 요인을 극복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sup>88)</sup>

## 나.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한계

회수지원기구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불투명한 재정적 지속가능성이다. 앞서 3.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현재의 수익화 구조하에서는 출연금의 소진이 불가피하다. 출연금이 소진되었을 경우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법률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 문제는 단순히 재정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IP담보대출 제도 전체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친다. 회수지원기구의 존속이 불확실해지면, 참여은행은 IP담보대출의 취급 자체를 축소할 유인이 발생하고, 이는 IP금융 생태계 전체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IP담보대출 잔액이 2024년 8월 기준 2조 2,503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220억원 규모의 회수지원기금이 제도적 안전장치로서 적정

---

87) 회수지원기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IP를 매입하면, 매입대금만큼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이 정리되고 그 손실 위험은 공적 기구로 이전된다. 회수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매입된 IP의 경제적 가치가 사실상 소멸한 상태에서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하며, 이는 경제적 실질에 있어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보전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구조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공적 재원 투입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

88) WIPO / IPOS, Unlocking IP-Backed Financing: Country Perspectives - Singapore's Journey, Geneva: WIPO, 2021, pp. 14-21. 싱가포르 IPFS는 정부가 IP담보 대출 손실의 80%를 분담하고 PFI가 20%를 부담하는 구조로 2014년에 시행되었으나, 4년간 3건 · SGD 1,200만의 대출만을 실행한 채 2018년 종료되었다. 주된 원인은 높은 사전 가치평가 비용, IP 유통시장이 없다는 점, 금융기관의 IP 평가 역량 부족이었다. 이후 싱가포르는 IP를 담보로 한 직접 대출 모델 대신, SIPS 2030(Singapore IP Strategy 2030) 하에서 IA/IP 가치평가 가이드라인 표준화, IP 공시 프레임워크 구축, EFS-VDP(Enterprise Financing Scheme-Venture Debt Programme) 등 생태계 인프라 정비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였다.

한 규모인지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sup>89)</sup>

#### 다. 비교법적 시사와 법제화의 과제

회수지원기구의 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 제도와 비교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영국의 BBB는 Companies Act 2006에 의한 일반 회사법인으로 설립된 정부 소유 공기업(government-owned public limited company)으로서, 소기업 금융지원 권한은 HM Treasury와의 각서 및 설립 정관에서 비롯된다.<sup>90)</sup> 미국의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역시 Small Business Act에 의하여 설립되어, 명확한 법적 권한과 책임 하에 운영된다. 중국의 경우, 지방정부 차원에서 특허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보전 및 보증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이 특허 담보화의 촉진 요인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 의존적 구조는 담보화의 지속가능성에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한국과 유사한 딜레마를 공유하고 있다.<sup>91)</sup> 이들 기관과 비교할 때, 한국의 회수지원기구는 법률상 근거의 구체성과 독립적 법인격이 없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적 취약성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회수지원기구의 법제화는 다음의 방향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첫째, 발명진흥법 제32조의2를 개정하여 회수지원기구의 법적 성격, 의사결정 구조, 매입 기준, 수익화 방법, 참여은행의 권리·의무를 법률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담기관의 평가 기능과 회수 기능을 분리하여 이해상충을 구조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회수지원기금의

---

89) 오세희 국회의원, 앞의 보도자료(각주 3).

90) BBB & UKIPO, 앞의 보고서(각주 85), p. 16.

91) Liu, Meijun et al., "Patent Collateralization: The Effect of Policy and Impact on Patenting", 2022. 중국에서 지방정부의 정책 개입이 특허 담보화의 가장 주요한 촉진 요인이었으나, 정책에 의존한 담보화의 지속가능성에는 한계가 있음을 설명한다.



재원 조성과 관련하여 정부 출연금의 규모·시기·조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sup>92)</sup> 이러한 입법론적 과제에 관하여는 VI장에서 상세히 검토한다.

## 5. 소결

IV장의 분석은 회수지원기구가 IP담보 실행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독자적 정책수단이면서도, 법적 근거의 불충분성·수익화 메커니즘의 한계·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도덕적 해이의 이중 과제라는 구조적 제약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1% 미만의 회수율은 ‘분리의 역설’이 공적 매입 단계에서도 그대로 재생산됨을 실증한다. V장은 이러한 한국법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할 단서를 미국·영국·일본의 법제에서 추출하는 비교법적 검토로 나아간다.

## V. 비교법적 검토

한국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론적 논의에 앞서, 주요국의 IP담보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의 IP담보 법제를 분석하되, 단순한 제도 소개가 아닌 “한국법의 구체적 한계에 대응하는 해법”을 각국에서 추출하는 방식으로 서술한다.<sup>93)</sup> Heller 등이 제시한 IP담보금융의 결정요인 분석틀(taxonomy)에

92) 이러한 입법론적 제언의 구체적 내용은 VI장 참조. 손승우·김태원, 앞의 논문(각주 5), 52-53면, 34-57면 이하도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93) 비교법적 검토의 대상으로 미국, 영국, 일본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IP담보 시장을 보유하고 UCC Art.9에 기반한 통합담보법제를 운용한다

따르면, IP담보 법제의 결정요인은 크게 제도적 결정요인과 경제적 결정요인의 두 축으로 구분된다. 제도적 결정요인은 계약법(담보권의 설정·이전 구조), IPR 등록부(공시 체계), 은행규제(Basel III 등 자본비용)의 세 요소로, 경제적 결정요인은 IP의 재배치가능성, 자산특수성(가치평가), 유효성·범위의 불확실성으로 각각 세분된다.<sup>94)</sup> 이를 기초로 본 장에서는 각국의 IP담보 법제를 ① 담보권 설정의 유연성, ② 공시 체계의 통합성, ③ 실행 절차의 효율성, ④ 정보비대칭 완화 메커니즘의 네 측면에서 비교·분석한다. 나아가 Mann(2018)은 미국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특허담보에 대한 채권자 권리가 강화된 것을 외생적 변이로 활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이러한 제도적 조건의 개선이 특허 보유 기업의 부채 조달 확대, R&D 지출 증가, 특허 산출량 증가로 이어짐을 검증하였는데, 이는 IP담보 법제의 제도적 설계가 단순한 형식적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혁신 투자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시사한다.<sup>95)</sup>

---

는 점에서, 영국은 부동산담보 제도와 정부 지원 체계의 법적 근거라는 측면에서, 일본은 한국 특허법의 모법(母法)으로서 질권 제도의 구조적 동질성과 함께 최근의 제도 혁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각각 선정 이유가 있다. 한국의 IP담보 법제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한 선행연구로는 손승우·김태원, 앞의 논문(각주 5), 52-53면; 박재원, 앞의 논문(각주 8), 69-72면 참조.

94) Heller / Leitzinger / Walz, 앞의 논문(각주 13), pp. 379-392. 각 결정요인은 그 자체로는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은 아니며, 모든 요인이 일정 임계치를 넘어야 IP담보 대출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장에서의 ① 담보권 설정의 유연성, ② 공시 체계의 통합성, ③ 실행 절차의 효율성, ④ 정보비대칭 완화 메커니즘이라는 네 측면의 분류는, 동 분석틀을 기초로 하되 한국법의 구체적 한계에 대응하는 비교법적 검토의 편의를 위하여 재구성하였다.

95) Mann, William, “Creditor Rights and Innovation: Evidence from Patent Collateral”,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130, Issue 1, 2018, pp. 25-47. 이 연구는 2013년을 기준으로 미국 내 특허 보유 기업의 38%가 보유 특허를 담보로 제공한 경험이었음을 밝혔다. 이들 기업은 Compustat 수록 기업 전체의 R&D 지출과 특허출원 중 약 20%를 차지한다(Compustat은 S&P Global이 제공하는 전 세계 상장기업 재무·시장 데이터베이스이다). Mann은 2002년부터 2009년 사이 미국 법원이 특허 담보

## 1. 미국: 통합상법전(UCC) Art.9과 연방특허법의 교차

### 가. 통합담보권(security interest)의 개념적 특징

미국법상 지식재산에 대한 담보권은 원칙적으로 통합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이하 UCC) Art.9의 적용을 받는다. UCC § 9-109(a)(1)은 인적재산(personal property)에 대한 모든 합의에 의한 담보거래에 Article 9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며,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은 § 9-102(a)(42)가 정의하는 “일반무형재산(general intangibles)”의 잔여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sup>96)</sup> 이 체계의 핵심적 특징은 질권(pledge)과 저당권(mortgage)의 구분 없이 “담보권”이라는 단일한 개념으로 모든 담보거래를 포섭한다는 점이다.<sup>97)</sup> 이러한 통합담보권 개념은 한국 민법상 물권법정주의(제185조)에 기초한 담보물권 유형 체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sup>98)</sup> 한국에서는 특허권에 대한 담보 설정이 권리질권(민법 제345조 이하)의 형태로만 가능하며, 이에 따라 질권의 설정·효

---

권자의 우선변제권과 현금흐름청구권을 강화한 판결 4건을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 삼아 분석하였고, 핵심 결론은 다음과 같다. 특허 담보는 실질적인 R&D 투자 증가와 혁신 성과 향상을 가져오며, 그 매개 요인은 대출계약상 확약(covenants)의 완화이다. 즉, 담보의 질이 높아지면 채권자가 차주의 사후적 행동을 일일이 통제할 필요가 줄고, 차주 기업은 보다 위험하되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할 여지를 얻게 된다. 담보물로서 IP가 가지는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수록 혁신에 대한 금융 접근성이 제고된다는 점이 이 연구의 핵심 정책 함의이다. 다만 분석 대상이 Compustat에 등록된 상장기업에 한정되어 있어 비상장 중소기업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판례 축적에 따른 점진적 변화와 입법을 통한 급격한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96) UCC § 9-102(a)(42)는 general intangible을 다른 유형의 인적재산(accounts, chattel paper, goods, instruments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재산의 잔여 범주로 정의하며, 특허권·상표권·저작권이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연방 IP법과 UCC의 적용 관계에 관하여는 후술 V.1.나. 참조.

97) 미국법상 통합담보권 개념의 의의와 한국법과의 차이에 관하여는, 손승우·김태원, 앞의 논문(각주 5), 52-53면, 34-57면; 김태형, 앞의 논문(각주 7), 71-110면 참조.

98) 민법 제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력·실행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반면 미국의 UCC 체계에서는 담보 목적물의 성질에 구애됨이 없이 동일한 담보권 설정 절차(security agreement의 체결 및 filing)가 적용되므로, 무형자산 담보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이 현저히 낮다.<sup>99)</sup> 나아가 UCC Art.9는 포괄담보(blanket lien)를 허용하여, 채무자의 현재 및 장래 취득하는 모든 일반 무형재산에 대하여 단일한 담보설정계약으로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sup>100)</sup> 이는 개별 특허권마다 별도의 질권 설정 등록을 요하는 한국법의 접근과 대조적이며, 특히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기술기업의 포트폴리오 담보화에 있어 제도적 효율성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 나. 연방특허법과 주법의 공시 체계 충돌

미국 IP담보법제의 고유한 쟁점은 연방특허법(35 U.S.C. § 261)과 UCC 주법 간의 공시 체계 충돌이다. 연방특허법 § 261은 특허권의 “양도, 부여 또는 이전(assignment, grant or conveyance)”에 대한 미국특허상표청(USPTO) 기록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담보권이 이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다.<sup>101)</sup> 이 쟁점에 대하여 Peregrine 판결은 등록저작권에 관하여 연방 저작권법 우위를 인정한 반면,<sup>102)</sup> Cybernetic Services 판결은 특허 담보권의 대항요건으로 USPTO 기록이 필수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sup>103)</sup> 다만 USPTO의 임의적 기록

99) Hochberg / Serrano / Ziedonis, 앞의 논문(각주 14), pp. 12-14. 동 연구는 미국 벤처대출 시장에서 특허담보의 경제적 기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100) UCC § 9-204(a) (“a security agreement may create or provide for a security interest in after-acquired collateral”). 포괄담보의 활용 실태에 관한 실증적 분석으로는, Mann, William, 앞의 논문(각주 94), pp. 30-35 참조. 동산·채권담보법제의 비교법적 관점에서는, 권영준, “국제 동향에 비추어 본 한국 동산채권담보법제”, 법조 제69권 제5호, 2020, 71-82면 참조.

101) 이 쟁점에 관한 한국 학계의 분석으로는, 박재원, 앞의 논문(각주 8), 84-87면 참조.

102) *In re Peregrine Entertainment, Ltd.*, 116 B.R. 194 (C.D. Cal. 1990). 동 판결은 등록 저작권에 대한 담보권의 대항요건 구비 장소가 연방 저작권청임을 판시하였다.

(discretionary recording)이 후순위 소유권 취득자(voluntary assignee)에 대한 관계에서 별도의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실무상 UCC filing과 USPTO 기록의 병행(이중 등록, dual filing)이 권고된다.<sup>104)</sup>

결과적으로 미국의 실무에서는 특허권 담보 설정 시 UCC financing statement filing과 USPTO recording을 병행하는 이중등록이 권장된다.<sup>105)</sup> 이러한 이원적 공시 체계는 한국의 지식재산처 단일 등록 체계와 비교할 때 거래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으나, Cybernetic Services 판결을 통하여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에서도 특허권 질권의 공시 방법에 관한 해석론적 쟁점이 존재하는바, 미국의 판례법적 정리 과정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sup>106)</sup> 한편, 공시 체계의 연방-주법 이중구조에 관하여는 캐나다의 사례도 참조할 만하다. 캐나다 역시 연방 특허법과 주법상 동산담보법(PPSA) 간의 등록 이원성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WIPO(2025)는 이러한 이중구조가 IP담보금융의 거래비용 증가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다.<sup>107)</sup>

103) In re Cybernetic Services, Inc., 252 F.3d 1039 (9th Cir. 2001). BAP 단계의 사건명은 Moldo v. Matsco, Inc., 239 B.R. 596 (9th Cir. BAP 2000). 제9순회 항소법원은 35 U.S.C. § 261의 ‘assignment, grant or conveyance’에 담보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UCC 주법상 filing으로 perfection이 충족된다고 판시하였다.

104) 다만 Cybernetic Services 판결은 제9순회의 판단이며 연방대법원 차원에서 확정된 법리는 아니다. 실무상으로는 UCC filing과 USPTO 기록을 병행하는 이중등록(dual filing)이 권고된다. UCC filing만으로는 후순위 담보권자(lien creditor)에 대한 우선권은 확보되나, 특허의 임의 양수인(voluntary assignee)에 대한 대항에는 USPTO 기록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In re Transportation Design & Technology Inc., 48 B.R. 635 (Bankr. S.D. Cal. 1985) 참조; 다만 동 판결에서 voluntary assignee에 대한 USPTO 기록 필요성에 관한 서술은 방론(obiter dictum)에 해당하나, 미국 실무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다). 이 이중등록의 부담이 미국 IP담보 공시 체계의 핵심적 비효율로 지적된다.

105) 이중등록의 실무적 필요성과 쟁점에 관하여는, INTA / Herrick Feinstein LLP, “UCC-based Trademark Security Interest Enforcement”, INTA Report, 2017도 상표권 담보에 관하여 유사한 분석을 제시한다.

106) 손승우 · 김태원, 앞의 논문(각주 5), 52-53면, 34-57면.

## 다. 담보 실행의 유연성: 사적 실행(private disposition)

III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한국법상 질권의 실행은 민법상 경매(제338조 제1항)와 간이변제충당(제2항)이 존재하나, 후자는 IP에 대한 실무상 활용이 극히 제한되어 경매가 사실상 유일한 경로이고, 유질계약은 상법 제59조에 의하여 상행위 채권 담보에 한하여 허용되나 은행의 특허 환가 역량이 없어 실효성이 없어, IP자산의 특수성을 반영한 유연한 환가가 곤란하다. 이에 대하여 UCC §9-610은 담보권자에게 담보물의 “사적 처분(private disposition)”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sup>107)</sup> 담보권자는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 reasonableness)의 기준을 충족하는 한, 경매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매각의 방법으로 담보물을 환가할 수 있다. 여기서 UCC §9-610(사적 처분)과 §9-620(담보물 취득, strict foreclosure)의 기능적 구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9-610은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하며, §9-620은 담보권자가 채무자의 동의(default 후 authenticated record 또는 20일 내 무이의)를 얻어 담보물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는 제도이다. 한국 상사유질(상법 제59조)은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자가 담보물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는 방식이므로 구조적으로 §9-620에 대응하고, 본 연구가 도입을 제안하는 특별환가 조항은 전문기관의 관여 하에 제3자에게 처분하는 §9-610형 사적 처분에 해당한다. 다만 §9-620은 채무불이행 후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반면, 한국 상사유

---

107) WIPO, 앞의 보고서(각주 69), pp. 13-14. 동 보고서는 담보권 등록을 위한 불명확한 요건과 맞춤형 절차의 필요성, 실사 및 행정적 노력이 거래비용을 높여 규모의 경제 달성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한다.

108) UCC §9-610(a) (“After default, a secured party may sell, lease, license, or otherwise dispose of any or all of the collateral in its present condition or following any commercially reasonable preparation or processing”). 김태형, 앞의 논문(각주 7), 71-110면에서도 사적 실행의 한국법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질은 변제기 전 사전 약정에 의한 합의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채무자 보호 수준에 차이가 있다. INTA/Herrick(2017)은 특히 상표권 담보에 있어 사적 실행의 실무적 한계를 분석하면서, 상표권의 경우 영업적 신용과의 불가분성 때문에 사적 처분 시에도 양수인의 사업적 적격성 확보가 추가적 과제가 됨을 지적하고 있다.<sup>109)</sup>

Hochberg 등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벤처대출(venture lending) 시장에서 특허담보는 투자자의 신호(signal)로서 기능하며, 2차 특허시장의 유동성이 높을수록 벤처대출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sup>110)</sup> 이는 앞서 III장에서 분석한 “분리의 역설”(III.1.나 참조)을 우회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한국의 IP담보 실행 특례 도입 논의에 있어 중요한 참조점이 된다. 다만, UCC Art.9의 포괄적 담보권 개념을 한국 민법의 물건법 체계에 직접 이식하는 것은 곤란하다.<sup>111)</sup> 물건법정주의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로 한정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미국식 통합담보권 개념의 전면적 도입보다는 IP자산의 특수성을 반영한 담보 실행 특례의 부분적 도입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 2. 영국: 부동담보와 정부 지원 체계

### 가. 고정담보와 부동담보의 이원적 구조

영국법상 IP에 대한 담보는 “부동담보”의 형태로 설정된다. Companies

---

109) INTA / Herrick Feinstein LLP, 앞의 보고서(각주 105). 미국 연방상표법상 상표는 영업적 신용과 함께 이전하여야 하므로(15 U.S.C. § 1060(a)(1); goodwill의 개념에 관하여는 각주 60 참조), 사적 실행 시에도 양수인이 해당 영업을 계속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된다.

110) Hochberg / Serrano / Ziedonis, 앞의 논문(각주 14), pp. 74-94.

111) 정창호, 앞의 논문(각주 6), 82-84면.

Act 2006 Part 25에 따르면, 회사의 재산에 대한 부동담보는 Companies House에 등록하여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된다.<sup>112)</sup> 영국 담보법제의 핵심적 특징은 고정담보(fixed charge)와 부동담보(floating charge)의 이원적 구조에 있다. 고정담보는 특정된 자산에 대하여 설정되며, 설정자의 자산 처분이 자유롭다.<sup>113)</sup> IP자산에 대하여는 고정담보와 부동담보의 결합이 실무적으로 활용되어, 특허 포트폴리오 전체에 대한 포괄적 담보 설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부동담보 구조는 한국법상 개별 특허권 단위의 질권 설정이 요구되는 체계와 비교할 때, 기술기업의 자금조달 효율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다만, 부동담보에 대하여는 고정담보에 비하여 우선순위가 낮게 인정되는 점, 그리고 도산 절차에서 prescribed part(법정유보분) 제도에 의한 채권 일부 유보가 적용되는 점에서 담보권자의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한계도 있다.<sup>114)</sup>

#### 나. 공시 체계: Companies House 일원화

영국의 담보 등록은 Companies House를 통하여 일원적으로 이루어진다. 부동담보의 등록은 21일의 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

112) Companies Act 2006 Part 25 ("Company charges") Chapter A1 (§ 859A~§ 859Q, "Registration of company charges").

113) WIPO / IPOS, 앞의 보고서(각주 88), pp. 7-10.

114) BBB & UKIPO, 앞의 보고서(각주 85), pp. 12-14. 영국 도산법상 부동담보 채권자는 고정담보 채권자, 도산비용, 우선적 채권자(preferential creditors)에 후순위로 변제받는다. 나아가 Insolvency Act 1986 § 176A(prescribed part(법정유보분) 제도)에 의하여 부동담보 대상 순재산의 일부(최초 £10,000의 50%, 초과분의 20%, 상한 £800,000)가 무담보 채권자를 위하여 강제 유보된다. IP에 대한 담보가 부동담보로 분류될 경우 이러한 제한이 모두 적용되므로, 도산시 담보권자의 실질적 회수가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 BBB & UKIPO, 앞의 보고서(각주 85), pp. 22-23 참조. 다만 2020년 4월 6일 이전에 설정된 부동담보에는 구 상한 £600,000이 적용된다(SI 2020/211 Article 2(3)-(4)).



(Companies Act 2006 § 859A(4)), 이를 해태할 경우 당해 담보는 청산인·관리인·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게 된다(Companies Act 2006 § 859H(3)).<sup>115)</sup> 이러한 엄격한 기한 제도는 공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다만, WIPO의 영국 IP금융 실태조사(2023)에 의하면, IP자산에 대한 담보등록은 특허등록부(Patent Register)와의 이중 공시 문제를 수반하며, 실무적으로 양 체계 간의 정보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sup>116)</sup> 이 문제는 앞서 검토한 미국의 연방-주법 이중등록 문제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며, 공시 체계의 일원화가 IP담보금융의 거래비용 절감에 있어 공통적 과제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시 체계의 접근성이 IP담보금융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Ciarabella 등(2022)은 프랑스의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2006년 INPI(프랑스 산업재산청)의 온라인 등록시스템 도입이 상표권 담보화 확률을 43% 증가시켰음을 밝혔다.<sup>117)</sup> 이 연구는 공시 체계의 접근성 개선이 IP담보금융 활성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며, 한국 지식재산청의 등록시스템 개선 논의에 있어서도 참조할 만하다.

## 다. 정부 지원 체계: BBB와 Innovate UK

영국의 IP금융 정책에서 주목할 것은 BBB와 Innovate UK의 역할이다. WIPO의 영국 IP금융 실태조사(2023)에 의하면, IP자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인식 부족(unfamiliarity)이 IP담보금융의 주요 비규제적 장벽으

115) Companies Act 2006 § 859H ("Consequence of non-delivery"): 담보 등록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담보는 청산인·관리인·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116) WIPO, Unlocking IP-Backed Financing: Country Perspectives - The United Kingdom's Journey, 2023, p. 25.

117) Ciarabella / Heller / Leitzinger, 앞의 논문(각주 21), pp. 35-37. 이는 IP담보금융에서 공시 체계의 접근성 개선이 정보비대칭 완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로 지적되고 있다.<sup>118)</sup> Innovate UK는 혁신기업에 대한 정부 직접 대출(Innovation Loan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Act 2017(UKRI 설립 근거)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법률상 근거의 명확성은, IV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지식재산처 고시에 근거하는 한국의 회수지원기구와 대비된다. 다만, BBB/UKIPO 보고서(2018)에 의하면, EFG 대출 포트폴리오의 전체 채무불이행률은 16%인 반면 등록 IP 보유 기업의 채무불이행률은 10%에 그쳐, IP 보유 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위험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규제상 IP담보에 대한 자본경감 혜택이 없어 IP담보 대출의 상용화에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가 있다.<sup>119)</sup>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가 IP금융에 대한 정부 지원의 또 다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WIPO(2023)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IP Hub Master Plan(2013) 및 SIPS 2030을 통해 명확한 법제와 IP 전문 중개기관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다만 2014-2018년 운영된 IPFS가 4년간 3건(SGD 1,200만)에 그치고 종료된 사실은 정부 손실분담 구조만으로는 IP담보시장이 자생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싱가포르의 무형자본 스톡(무형자산 총 가치 누적액)은 2013-2016년 연 30%씩 성장하였으나, 이는 IP담보대출 규모 성장률이 아니라 무형자산 일반의 축적 속도를 의미하므로, 싱가포르 모델로부터는 시행착오로부터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sup>120)</sup> 추가적으로 싱가포르의 사례는 법적 근거의 명확성이라는 영국 모델의 장점과 정부 직접 개입이라는 한국적 접근의 접점을 보여주는 사례로서도 참조할 만하다. 영국의 사례는 정부 지원 기관의 법적 지위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IP담보 회수지원기구가 발명진흥법

---

118) WIPO, 앞의 영국 보고서(각주 116), p. 27.

119) BBB & UKIPO, 앞의 보고서(각주 85), pp. 14-16.

120) WIPO / IPOS, 앞의 보고서(각주 88), p. 7, 12, 16.

에 명시적 근거 규정을 확보할 필요성은 영국 모델의 검토를 통하여 더욱 분명해진다.

### 3. 일본: 질권 제도와 사업성평가 모델의 이원적 접근

#### 가. 특허법상 질권 제도: 한국법과의 구조적 동질성

일본 특허법의 질권 제도는 한국 특허법의 역사적 모태로서, 양국 법제 간에 높은 구조적 동질성이 인정된다. 일본 특허법 제95조는 질권자의 실시 제한을, 제96조는 물상대위를, 제98조 제1항 제3호는 질권 설정 등록의 효력발생요건성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특허법 제121조(질권 설정 등록)의 구조와 사실상 동일하다.<sup>121)</sup> 양국 질권 제도의 주요 대응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질권 등록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양국 모두 효력발생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한국 특허법 제101조, 일본 특허법 제98조 제1항 제3호). 둘째, 질권자의 실시 가능성에 관하여 양국 모두 원칙적 불허, 계약에 의한 허용이라는 동일한 구조를 취한다. 셋째, 공유 특허의 질권 설정에 관하여 양국 모두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구한다(한국 특허법 제99조 제2항, 일본 특허법 제73조 제1항). 넷째, 공시 기관이 일원화(지식재산처(특허청))되어 있다.<sup>122)</sup> 그러나 양국 간에는 의미 있는 차이도 존재한다. 가장 주목할 것은 일본 특허법 제96조가 물상대위에 관하여 라이선스로 및 양도대가에 대한 질권 행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 특허법 제123조도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에 대한 물상대위를 명

121) 일본 특허법 제95조~제98조 (<<https://laws.e-gov.go.jp/law/334AC0000000121>>). 한일 특허법 질권 제도의 상세 비교에 관하여는, 본 연구 II장 제2절 참조.

122) 양국 질권 제도의 구조적 동질성에 관한 분석으로, 박유선, 앞의 논문(각주 10), 39-74면 참조.

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 특허법 제96조가 양도대가(讓渡対価)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반면, 한국 특허법 제123조는 ‘실시 대가’에 한정하여 특허권 양도 시 대가에 대한 물상대위 적용 가능성이 해석론으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의 차이가 존재한다.<sup>123)</sup> 일본에서도 특허권 질권의 직접 실행 판례는 드물며, 금융기관은 질권 대신 양도담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확인된다.<sup>124)</sup>

### 가. 기업가치담보권(企業価値担保権)의 신설

일본은 이러한 질권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2024년 6월 「사업성융자의 추진 등에 관한 법률(事業性融資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이하 ‘사업성융자추진법’)」을 제정하여 기업가치담보권(企業価値担保権)을 신설하였다(2026년 5월 25일 시행 예정).<sup>125)</sup> 동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가치담보권은 채무자 회사의 총재산(総財産)을 일체로 담보권의 목적으로 하며, 특허권, 노하우, 고객 기반, 브랜드 가치 등 모든 무형자산이 포함된다. 제20조 제1항에 따라 설정 후에도 설정자는 통상의 사업활동 범위 내에서 자산의 사용·수익·처분 권한을 유지한다(다만, 통상의 사업활동 범위를 초과하는 처분 등에 관해서는 모든 기업가치담보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sup>126)</sup> 이는 개별 특허권 단위의 질권 설정에

---

123) 이 해석론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 특허법 제96조처럼 양도대가를 명시적으로 열거하는 조문 정비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124) 平野聖, “知的財産権の金融担保法上の位置付け”, 川崎医療福祉学会誌 第14巻 第1号, 2004, 117면. 平野는 질권이 “특허를 받을 권리(特許を受ける権利)”에 설정 불가능하고, 담보권자의 사적 실행(私的実行)이 허용되지 않으며, 등록비용이 양도담보보다 높다는 점 등을 들어, “현시점에서는 양도담보의 채용이 가장 합리적(現時点では讓渡担保の採用が最も合理的)”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125) 「事業性融資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令和6年 法律第52号, 2024.06.07 성립, 2024.06.14 공포, 2026.05.25 시행).

126) 동법 제7조 제1항, 제20조 제1항. WIPO, 앞의 일본 보고서(각주 62)에서 동 제도의 개요를 소개하고 있다.

다른 비효율성을 우회하고, 사업 전체의 계속기업가치에 기초한 담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혁신으로 평가된다. 기업가치담보권은 영국의 부동담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대륙법 전통의 담보물권 체계 내에서 이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한국법에 대한 시사점이 크다. 한국과 일본은 동일한 대륙법 계수 전통 위에 유사한 특허법 체계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기업가치담보권 도입 경험은 한국의 포괄 IP담보 법제 설계에 있어 가장 직접적인 참조 모델이 될 수 있다. 다만 기업가치담보권의 실행은 법원이 관재인(管財人)을 선임하여 사업 전체를 양도하는 준사법적(quasi-judicial) 절차(사업성용자추진법 제83조 이하, 특히 관재인 선임에 관하여는 제109조 제1항)로, VI장에서 제안하는 미국 UCC § 9-610형 사적 처분 모델(법원 관여 없는 자력구제)과는 구조적으로 상이하다. 따라서 일본 EVC의 시사점은 포괄담보화의 개념적 정당성에 있으며, 개별 IP의 실행 절차에 관한 구체적 모델로서는 UCC 방식이 보다 적합한 참조점이 된다.

### 다. 사업성평가(事業性評價)를 통한 간접적 IP금융 모델

일본의 IP금융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IP를 직접 담보로 평가하지 않고, 기업의 기술력·사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업성평가 모델이다. 일본 특허청(JPO)은 FY2014(平成26年度) 시범 운영을 개시하고 FY2015부터 본격 실시된 지재금융촉진사업(知財金融促進事業)을 운영하며,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시 활용 가능한 지재비즈니스보고서(知財ビジネス報告書, 구 知財ビジネス評価書)를 제공하고 있다.<sup>127)</sup> WIPO의 일본 IP금융 실태조사(2025)에 의하면, 사업성평가 모델의 핵심은 IP의 독립적 가치가 아닌 IP가 당해 기업의 사업 전체 맥락에서 갖는 의미

127) WIPO, 앞의 일본 보고서(각주 62), pp. 10-12.

를 평가한다는 점에 있다.<sup>128)</sup> 이러한 접근은 II장에서 분석한 IP 가치 평가의 근본적 한계, 즉 IP자산은 그것이 활용되는 사업 맥락을 떠나서는 독립적 가치를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에 대한 실천적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III장에서 분석한 “분리의 역설”에 대한 일본적 대응이기도 하다. IP의 독립적 가치평가를 시도하지 않음으로써, IP가 사업 맥락에서 분리될 때 발생하는 가치 하락의 문제 자체를 우회하는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사업성평가 모델은 지역금융기관(地域金融機関)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지방은행(地方銀行)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심사에서 IP 요소를 사업성 평가의 일부로 반영하는 실무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sup>129)</sup> 한국에서도 IP담보대출에 참여하는 12개 은행 가운데 지방은행의 비중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지역금융기관 중심 사업성평가 모델은 한국의 IP금융 평가 체계 개선에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국에서도 유사한 정책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는바, WIPO(2023)에 의하면 중국의 IP질권대출(知识产权质押贷款)은 지방정부의 이자보전·보증 정책에 힘입어 연 20-30% 성장하고 있으나, 전체 대출의 1% 이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IP가치평가 기준의 통일이 핵심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sup>130)</sup> 다만, 일본의 사업성평가 모델이 IP의 독립적 담보가치 평가를 회피하는 간접적 접근에 머무르고 있다는 한계도 지적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델 하에서는 IP 자체가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128) WIPO, 앞의 일본 보고서(각주 62), p. 6, 10.

129) WIPO, 앞의 일본 보고서(각주 62). 지역금융기관 중심의 사업성평가 확산 실태에 관한 구체적 데이터는 JPO, 知財金融事業(구 知財金融促進事業) 실적 보고를 참조.

130) WIPO, “Country Perspectives: China’s Journey”, Unlocking IP-backed Financing Series, 2023. 중국의 IP질권대출(知识产权质押贷款)은 지방정부의 이자보전·보증 정책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으나, IP가치평가 기준의 통일이 핵심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업성에 대한 정성적 판단이 대출 심사의 기초가 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IP담보금융”이라기보다는 “IP를 고려한 사업금융”에 가깝다.

#### 4. 소결: 한국법에의 시사점

미국(UCC § 9-610의 사적 실행), 영국(부동산담보 · BBB의 공적 보증), 일본(2024년 기업가치담보권)의 비교법적 검토는 다음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담보 실행의 유연성(사적 처분)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통제 장치를 결합하는 방식이다.<sup>131)</sup> 둘째, 공적 보증 · 매입 기구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거버넌스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sup>132)</sup> 셋째, 개별자산 단위를 넘어 기업가치 또는 포트폴리오 단위의 담보를 허용하여 ‘분리의 역설’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이다.<sup>133)</sup> 다만, 비교법적 제도의 한국법 수용에 있어서는 “번역적 비교법(translational comparative law)”의 관점이 견지되어야 한다.<sup>134)</sup> UCC Art.9의 포괄적 담보권 개념은 한국 민법의 물권법정주의와 양립하기 어려우며, 영국의 부동산담보 역시 한국 담보물권 체계와 직접적으로 호환되지 않는다. 따라서 각국 법제의 장점은 한국 법체계의 기본 구조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 · 선별적으로 수용하되, 그 구체적인 입법론적 구현 방안은 VI장에서 상세히 검토한다.

131) 김태형, 앞의 논문(각주 7), 71-110면에서도 사적 실행 허용을 입법론적 개선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132) 최철, 앞의 논문(각주 11), 232-253면.

133) 한국의 회수지원기구 법적 근거의 취약성에 관하여는, 본 연구 IV장 제1절 참조.

134) “번역적 비교법”이란 외국 법제도를 한국 법체계의 문법으로 재해석하여 수용하는 접근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제도 이식(legal transplant)과 구별되며, 수용국의 법적 전통과 제도적 맥락을 존중하는 비교법 방법론이다. 박유선, 앞의 논문(각주 10), 39-74면 참조.

## Ⅵ.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한 입법론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본 장에서는 IP담보금융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1. IP담보 실행 제도의 개선

#### 가. 사적 실행의 부분적 허용

Ⅲ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현행 민법상 질권 실행은 경매와 간이 변제충당으로 한정되나, 후자는 절차적 제약으로 실무 활용이 거의 불가능하여 경매가 사실상 유일한 경로로 귀결된다.<sup>135)</sup> 질권의 직접 실행에 관한 판례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러한 제도적 경직성이 실무에서 IP담보의 실효적 환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Ⅲ장에서 제시한 “분리의 역설”의 관점에서, 경매 절차에 의한 환가는 이러한 가치 훼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신속한 사적 실행의 허용은 IP가 사업 맥락에서 완전히 분리되기 이전에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적 실행은 (i) 법원 경매 대비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간적 가치 하락을 최소화하고,

---

135) 민법 제338조 제1항은 경매를, 제2항은 감정인의 평가에 의한 간이변제충당(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을 각각 규정한다. 그러나 제2항의 간이변제충당은 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객관적 감정평가가 전제되는데, 시장가격의 공개적 관찰이 곤란한 IP자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자체의 신뢰성 문제로 인해 실무상 활용이 극히 제한된다. 민법 제339조의 유질금지는 상법 제59조에 의하여 상행위로 인한 채권 담보의 질권에는 적용이 배제되므로, IP담보대출(은행의 상행위)에서 유질 자체는 허용된다. 다만 유질이 허용되더라도 은행의 특허 활용·처분 역량이 없어 실효적 환가가 곤란하다는 점이 본문의 핵심 논점이다. Ⅲ장 2.가.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특허권에 대한 경매는 감정평가의 곤란, 입찰자가 없고, 정보비대칭에 의한 레몬 시장 형식으로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ii) 전문 평가기관 또는 IP 중개기관의 관여 하에, 해당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매수인을 사전에 특정할 수 있어 거래 상대방 선택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분리의 역설이 발생하는 시간적 간극을 축소한다. V 장에서 검토한 미국 UCC §9-610의 사적 처분 제도를 참조하면, IP담보의 환가에 있어 유연성을 부여하는 핵심적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sup>136)</sup> 다만, UCC Art.9의 포괄적 담보권 개념을 한국 민법의 물권법정주의 체계에 직접 이식하는 것은 곤란하므로,<sup>137)</sup> IP자산의 특수성을 반영한 담보 실행 특례의 부분적 도입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sup>138)</sup>

구체적으로, 발명진흥법에 IP담보 특별환가 조항을 신설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문평가기관의 감정을 거쳐 임의매각을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담보권 설정 시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사적 실행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것. 둘째, 임의매각 시 독립된 발명의 평가기관(발명진흥법 제28조)의 감정을 거칠 것. 셋째, 매각 대금이 감정가의 일정 비율 이상일 것. 이러한 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채무자의 이익 보호와 담보 실행의 유연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적 실행은 III.2.다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은행이 특허를 직접 활용·처분할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은행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평가기관 또는 IP 중개기관의 관여 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한다. 다만 III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전문 IP 중개 시장이 성숙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별환가 조항의 즉각적 실효성

136) UCC §9-610. “IP Security Interests Outline” 및 V 장 1. 다. 참조.

137)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로 한정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민법 제185조.

138) 정창호, 앞의 논문(각주 6), 88-89면. UNCITRAL 담보거래 입법론을 기초로 하여, 지식재산권 자체의 실행, 라이선스 관련 권리의 실행, 유형자산과 결합된 IP의 실행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담보권자에게 재량적 실행 수단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은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회수지원기구가 법정 중개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2순위 법제화와 사실상 병행 추진되어야 하며, 시장 기반이 갖추어질 때까지는 특별환가 조항의 효과가 회수지원기구 채널을 통해 주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전문 IP 중개 시장의 육성, 평가기관의 매수인 발굴 기능 부여, 회수지원기구의 중개 역할 법제화’가 동반되어야 한다.<sup>139)</sup>

이러한 사적 실행의 부분적 허용 제안이 기존 민법 체계와 정합성을 유지하는지에 관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물건법정주의(민법 제185조)와의 관계이다. 민법 제185조는 물권의 ‘종류’를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발명진흥법상 IP질권의 특별환가 조항은 기존에 민법이 인정하는 ‘질권’이라는 물건 유형의 틀 안에서 그 ‘실행 방법’에 관한 절차적 특칙을 신설하는 것이지,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다. 물건법정주의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의 법정을 요구하나, 물권의 실행절차까지 민법에 의해서만 규율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아니다.<sup>140)</sup> 이 점은 이미 동산채권담보법이 동산담보권이라는 새로운 담보물권을 특별법에 의해 창설하고, 나아가 동법 제21조 제2항에서 경매 외에 귀속청산·처분청산이라는 사적 실행 방법을 도입하면서도 물건법정주의 위반으로 문제되지 않은 점에서 확인된다. 마찬가지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역시 유동화자산에 대한 취득·이전 및 채권양도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민법상 일반적 실행절차와 다른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sup>141)</sup> 따라서 발명진흥법에 의한 IP질권 실행방법의

139) 김태형, 앞의 논문(각주 7), 71-110면에서도 현행법의 사적실행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IP담보의 활용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임을 지적하면서, UCC식 사적 처분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IP담보금융의 활성화와 담보권자의 권리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140) 지원립, 민법강의 제22판, 2025, 홍문사. 308면 참조.

특칙은 물권법정주의가 허용하는 ‘법률에 의한 물권 실행방법의 다양화’ 범주에 해당한다. 나아가, 입법론적 차원에서 개정안은 ① 경매와 사적 실행의 관계(선택적 병행)를 규정하는 조항, ② 권리질권의 실행 절차 다양화를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여야, 물권법정주의와의 정합성에 관한 해석론적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특별환가절차의 도입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한 무체재산권 강제집행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채권 집행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석되고 있으나, 대법원 1968. 1. 30. 선고 67다2074 판결이 확인한 바와 같이, 점유가 불가능한 무체재산권에 대하여 유체동산 집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sup>142)</sup> 현행법상 법원은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등 적당한 방법으로 환가를 명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특허권의 기술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법원의 재량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별환가방법의 근거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질권이 설정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법원이 환가를 명하는 경우, 전문평가기관의 감정 결과와 잠재적 매수인의 사업적 적격성을 고려하여 임의매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상표권의 경우 영업적 신용과의 불가분성으로 인하여 양수인의 사업적 적격성 확보가 추가적 과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sup>143)</sup> 또한 지식재산 담보권의 우선순위

14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금융위원회 등록만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제8조는 별도의 부기등기나 등록 없이도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민법 제187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담보권의 실행(환가) 절차에 관한 특례가 아니라, 취득·이전 및 대항요건에 관한 절차적 특례다.

142) 앞의 판결(각주 51).

규정을 명확히 하고, 라이선스 관련 권리의 실행 방법과 로열티 수취권에 대한 담보권 행사 절차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sup>144)</sup> 이러한 우선순위의 명확화는 다수 채권자가 관여하는 IP담보 실행에 있어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다. 집합IP담보 및 담보신탁 제도의 검토

현행법상 특허권에 대한 질권은 개별 특허권 단위로 설정하여야 하며, 이는 다수의 특허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상당한 거래비용을 수반한다. 특허법 제99조의 공유 특허권 전원동의 요건은 이러한 비효율을 더욱 가중시킨다.<sup>145)</sup><sup>146)</sup> 따라서 V장에서 검토한 영국의 부동담보와 일본의 포괄담보 모델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sup>147)</sup> WIPO의 일본 IP금융 실태조사(2025)도 동 제도가 일본 IP금융의 구조적 전환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up>148)</sup> 이러한 비교법적 동향은 개별 자산 단위의 질권 설정이라는 한국법의 틀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만, 포괄담보 개념의 전면적 도입은 물권법정주의 원칙과

143) INTA & Herrick Feinstein LLP, 앞의 보고서(각주 105)는 상표권 담보 실행 시 영업적 신용과의 불가분성 문제를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144) 박재원, 앞의 논문(각주 8), 92-93면. 동 연구는 지식재산 담보권의 우선순위 규정, 라이선스 관련 권리의 실행 방법, 로열티 수취권에 대한 담보권 행사 절차 등을 UNCITRAL 입법론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이를 한국법에 수용하기 위한 구체적 입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145) 특허법 제99조 제2항(“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은 공유 특허권의 대금분할 청구를 인용하여 환가가능성을 확대하였으나, 이는 질권 실행과는 별개의 법리이다.

146) V 장 2. 가.에서 분석한 영국의 고정담보와 부동담보의 이원적 구조 참조. Companies Act 2006 Part 25.

147) V 장 3. 나.참조.

148) WIPO, 앞의 일본 보고서(각주 62), pp. 10-13. 동 보고서는 기업가치담보권이 일본 IP금융의 “게임 체인저”로 기능할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특히 한국과 동일한 대륙법 체계 내에서 포괄담보 개념을 구현한 입법례로서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의 정합성 문제를 야기하므로, 우선적으로 특허법에 특허 포트폴리오 일괄 질권설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적 접근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지식재산 담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괄담보 시 공시 방법의 개선 역시 필요하다.<sup>149)</sup> 한편, 질권 설정 방식의 대안으로서 담보신탁의 활용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허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수익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IP담보신탁 구조는, 담보 실행의 유연성 확보와 도산절차에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sup>150)</sup> 다만, 대법원 2022다233164 판결은 신탁등기의 제3자 대항력에 관하여, 당해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다는 점만 대항할 수 있을 뿐 신탁계약의 구체적 내용까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담보신탁 구조의 법적 안정성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sup>151)</sup> IP담보신탁이 실무상 활용되기 위하여는, 신탁재산의 범위 확정, 수익권의 담보적 활용 방법, 사해행위취소 리스크 등에 관한 판례의 축적이 필요하다.

## 2. 회수지원기구의 법적 기반 강화

### 가. 법률상 근거의 구체화

IV.1.나.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발명진흥법 제32조의2의 수권 규정만으로는 회수지원기구의 복잡한 법률관계를 규율하기에 충분하지 않

149) 손승우·김태원, 앞의 논문(각주 5), 52-53면, 34-57면.

150) 최철, 앞의 논문(각주 11), 232-253면. 동 연구는 담보신탁 구조가 ① 담보 실행의 유연성 확보, ② 도산절차에서의 안정성 제고, ③ 정부·금융기관·신탁회사 간 협력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151)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 2012. 7. 26. 시행 개정 신탁법 하에서, 신탁등기를 통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당해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다는 사실”에 한하며, 신탁원부에 첨부된 신탁계약의 구체적 내용·조건은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종전 판례의 법리와 다른 해석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담보신탁 구조에서 수익자·담보권자가 신탁계약 조건을 제3자에게 주장하는 데 법적 한계가 있다.

다.<sup>152)</sup> 비교법적으로, 영국의 BBB는 전용 설립법 없이 Companies Act 2006에 의한 일반 회사법인으로 설립된 정부 소유 공기업으로서, 그 법적 근거는 설립 정관과 HM Treasury의 운영 지침에 있으며, SBA와 달리 전용 설립법에 의한 법적 기반이 없다는 점에서 한국 회수지원기구와 일부 비슷한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sup>153)</sup> 미국의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BA)도 Small Business Act에 의하여 설립된 연방기관으로서, 대출 보증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 운영 기준, 감독 체계가 법률 수준에서 규정되어 있다.<sup>154)</sup> 싱가포르의 IP Financing Scheme 또한 법률상 명확한 근거하에 참여 금융기관에 대한 자체 심사 의무와 손실 분담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sup>155)</sup> 이에 비추어, 발명진흥법 제32조의2를 다음의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회수지원기구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정부 출연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적 기구로서의 지위를 법률에 명시한다. 둘째, 담보 IP의 기술적 가치, 수익화 가능성, 매입 가격 산정 방법과 같은 매입기준을 시행령 수준에서 규정한다. 셋째, 출연금 납입 의무, 손실 분담 비율, 매입 요청 조건과 같은 참여은행의 권리·의무를 법률 또는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율한다.

## 나. 거버넌스 구조의 재설계

현행 회수지원기구의 운영 구조에서는 KIPA가 예비평가와 회수 결정을 모두 관장하고 있어, 구조적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다.<sup>156)</sup> KIPA

---

152) 발명진흥법 제32조의2(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의 실시)(Ⅳ 장 1.가.참조).

153) BBB & UKIPO, 앞의 보고서(각주 85), p. 17.

154) 미국 SBA의 7(a) Loan Program은 Small Business Act(15 U.S.C. § 636)에 근거하며, 대출 보증의 요건, 보증 비율(85%/75%), 부실 시 청산 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50 57)가 법률 및 하위 규범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155) WIPO / IPOS, 앞의 보고서(각주 88), pp. 11-15.

는 IP금융 활성화를 정책적 목표로 추구하면서도, 부실 발생 시 해당 IP의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러한 이중 역할은 매입 결정의 독립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구조적 원인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거버넌스 개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매입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IP 분야 법률전문가, 기술평가 전문가, 금융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한다. 둘째, 평가 기능과 회수 기능을 조직적으로 분리하여, 최소한 동일한 IP에 대하여 예비평가를 수행한 부서가 매입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차단벽(Chinese Wall)을 설치한다. 셋째, 매입 건수, 매입 가격, 수익화 실적, 출연금 집행 현황과 같은 회수지원기구의 운영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 다. 출연금 관리의 법제화

현행 출연금 관리는 KIPA와 참여은행 간의 출연협약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으며, 법률 수준의 회계 분리, 감사, 보고 의무는 명시적으로 부과되어 있지 않다.<sup>157)</sup> IV장의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2024년까지 누적 307건, 약 220억원의 매입이 이루어졌으나 매각은 7건에 불과한 상황에서, 출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제도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시행령에 다음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회수지원기금의 재원 구성과 관련하여 정부 출연금의 규모·시기·조건을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한다. 둘째, 출연금의 회계를 KIPA의 일반 회계와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셋째, 외부 감사, 보고 또는 공시를 통해 공적 재원의 투명한 관리를 담보한다.

156) IV장 2.가.에서 분석한 KIPA의 이중적 지위 문제 참조.

157) IV장 3.에서 분석한 출연금 관리 구조의 법적 한계 참조.

## 라.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의 법적 근거 마련

IV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회수지원기구의 존재 자체가 참여은행의 자체적 리스크 관리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는 도덕적 해이의 구조적 원인이 된다.<sup>158)</sup> IP담보금융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적 실사와 정기적 재평가가 필수적이다.<sup>159)</sup> 싱가포르의 IP Financing Scheme은 참여 금융기관에 대한 자체 심사 의무와 손실 분담 요건을 명시하여, 도덕적 해이를 구조적으로 억제하는 설계를 채택하고 있다.<sup>160)</sup> 이를 참조할 때, 참여은행이 매입 요청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자체적 회수 노력(대물변제 협의, 제3자 매각 시도 등)의 선행을 법률에 의하여 의무화하고, 매입 요청 시 자체 심사의 적정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부실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은행에 대하여 출연금 분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법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참여은행의 사전적 리스크 관리 유인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3. IP가치평가 제도의 개선

### 가. 평가 방법론의 법적 표준화

II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현행 발명진흥법 제31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는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sup>161)</sup> 33개 발명의 평가기관 간 평가 방법론의 편차가 상

---

158) IV장 4.에서 분석한 도덕적 해이의 구조적 원인 참조. Demmou / Franco, 앞의 논문(각주 76), pp. 33-41. 정책 개입의 필요성과 함께 그 설계의 정밀성을 강조한다.

159) 윤종미, 앞의 논문(각주 9), 73-98면.

160) WIPO / IPOS, 앞의 보고서(각주 88), pp. 19-21.

161) 발명진흥법 제31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 II장 2.가.에서 분석하였다.



당하여, 동일한 특허에 대한 평가 결과가 기관별로 현저히 상이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의 불확실성은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담보 실행 단계에서의 환가가치 예측을 더욱 곤란하게 한다. IP금융 활성화의 어려움은 명확한 법적 근거 부족, 회계 처리의 불명확성, 가치평가 체계의 미성숙에서 비롯되므로 법적 체계, 회계 기준, 평가 방법론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적 체계가 필요하다.<sup>162)</sup> Heller 등도 IP가 Basel III 체계하에서 담보적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핵심 원인으로 표준화된 가치평가 방법론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sup>163)</sup> Maastricht대학의 IP증권화 연구도 IP자산의 기술진부화 리스크가 가치평가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표준화된 평가 방법론의 도입이 IP기반 금융상품의 신뢰성 확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sup>164)</sup> 이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시행령에 평가 방법론의 표준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접근법·시장접근법·비용접근법의 적용 기준, 기술진부화 할인율의 산정 기준, 평가 결과의 유효기간 등을 표준화가 필요하다. 이는 평가의 신뢰성 향상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Basel III 체계하에서 IP담보의 위험가중자산 산정을 합리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평가 책임의 법적 명확화

현행법상 발명의 평가기관이 부실한 평가를 수행하여 금융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법적 책임 배분이 명확하지 않다. 발명진흥사업

162) 박유선, 앞의 논문(각주 10), 39-74면.

163) Heller / Leitzinger / Walz, 앞의 논문(각주 13), pp. 379-392.

164) Khanna, 앞의 논문(각주 34), pp. 94-100. 동 연구는 IP자산의 기술진부화 위험(technology obsolescence risk)이 가치평가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분석하면서, 표준화된 평가 방법론과 정기적 재평가 메커니즘의 도입이 IP기반 금융상품의 신뢰성 확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운영요령(지식재산처 고시)은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 제재에 그치며, 평가 오류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가 충분히 발전되어 있지 않다.<sup>165)</sup> 이를 위하여, 발명진흥법에 평가기관의 선관주의의무를 명시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평가 오류로 금융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을 법률 수준에서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평가의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동시에, 평가기관의 과도한 위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하는 균형 잡힌 설계가 요구된다.

## 4. 성과관리 법적 프레임워크의 도입

### 가. 성과관리의 법적 의무화

Ⅳ장에서 분석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회수율 1% 미만)와 Ⅲ장에서 규명한 담보 실행의 구조적 실패는, 현행 성과관리 체계가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포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IP담보금융은 정부의 재정 투입에 의하여 운영되는 정책금융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성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공개는 공적 책무의 일환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 발명진흥법에는 IP금융 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sup>166)</sup> IP금융 잔액이 10조원을 돌파하고 부실률이 3.95%에 이르는 현 시점에서,<sup>167)</sup> 기존의 성과관리 체계가 경제적 편익 분석인 지원금액, 지원건수 대비 금융연계 건수

---

165)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특허청 고시 제2023-13호, 2023. 7. 4. 시행).

166) 발명진흥법의 현행 조문에는 IP금융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공개 의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167) 서울경제, 앞의 보도(각주 2).

및 금액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제도적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발명진흥법에 “IP금융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및 공개”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경우 이는 국가재정법상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과도 정합하며, IP금융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나. 성과 평가 체계의 설계

성과관리 법적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에 관한 평가 체계의 설계이다. 이에 관하여 본 연구는 성과 평가의 세 가지 규범적 차원을 제시한다.

첫 번째 차원은 “IP금융이 혁신 기업의 자본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였는가?”에 관한 것이다. IP금융 정책의 정당성은 전통적 담보가 부족한 혁신 기업에 자금 공급의 통로를 제공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이 전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가 II장에서 분석한 IP가치평가의 구조적 한계와 III장에서 규명한 담보 실행의 “분리의 역설”이 실제로 수혜기업의 자금 조달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IP담보대출 이후 수혜기업의 후속 민간자금 조달 여부(크라우드딩 인 효과), 기업 생존율, 특허 출원·활용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IP금융이 “일회성 자금 지원”에 그치는지 아니면 “자본시장 진입의 교량”으로 기능하는지를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차원은 “IP금융의 사회적 외부효과가 재정 투입의 기회비용을 상회하는가?”라는 질문에 관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재무적 건전성 평가를 넘어, IP담보금융 정책의 총체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예컨대 IP담보대출의 부실률이 3.95%라는 사실은 약 96%의 대출이 정상 상환되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낮은 부실률만으로 정책의 사회적

순편익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정상 상환 기업 중 상당수가 IP담보금융이 아니었다면 자금 조달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들이 창출한 매출, 고용, 특허 출원 등의 외부효과는 정책의 순편익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편익은 재무지표와 별도로 실증적 검증을 요한다. 본 연구가 부실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IP담보금융의 순편익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개선하여 부실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정책의 순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규범적 처방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정책금융의 정당성은 시장 실패의 보정에 있으므로, IP금융의 순편익 평가는 수혜기업의 사적 편익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기회비용 분석은 필수적이다. 동일한 재정 투입이 직접 보조금, 세액공제, R&D 바우처 등 대안적 정책 수단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과와 비교하여, IP담보금융이 보다 효율적인 시장 실패 보정 수단인지 검증되어야 한다.

세 번째 차원은 “현행 법적 인프라가 IP금융의 자기교정 메커니즘을 내장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건전한 정책금융 체계는 부실의 축적을 조기에 감지하고 교정하는 환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본 연구가 분석한 바와 같이, 현행 체계에서는 전술한 부실률의 급격한 상승과 회수지원기구의 매입 급증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포착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법적 메커니즘이 없다. 이 세 번째 차원의 평가는 연체율·부실률 등 재정건전성 지표의 추이, 정책자금에서 민간금융으로의 전환율, 회수지원기구의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관찰함으로써, 법적 프레임워크 자체의 자기교정 역량을 진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다. 실증적 검증의 과제

이상의 평가 차원은 성과관리 법적 프레임워크의 규범적 구조를 제

시한 것이며, 각 차원의 실증적 검증은 별도의 후속 연구 과제로 남는다.<sup>168)</sup> 특히, 첫 번째 차원(자본 접근성 개선)의 검증을 위하여는 IP담보대출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의 체계적 비교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의 설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실증적 검증은, 본 연구가 제시한 법적 프레임워크에 구체적인 데이터와 실증적 근거를 부여하여, IP금융 정책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설명하고 정책 의사결정의 합리적 기초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5. 입법 우선순위와 이행 로드맵

이상에서 검토한 입법 과제를 종합하면, 그 시급성과 실현가능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 제1순위는 IP담보 실행 특별절차의 도입이다. 이는 담보로서의 기능은 부여하면서 실행 수단은 봉쇄하는 IP담보금융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과제이다. III장에서 분석한 “분리의 역설”이 가장 첨예하게 발현되는 지점이 바로 담보 실행 단계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발명진흥법에 전문평가 기반 임의매각 허용 조항을 신설하고, 민사집행법에 지식재산권 특별환가방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통합담보등기 체계의 구축도 이와 병행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sup>169)</sup> 제2순위는 발명진흥법 제32조의2 개정을 통한 회수지원기구의 법률상 근거 확보이다(VI.2 참조). 이는 제도의 예측가

168) 정책금융의 기회비용 분석에 관하여는, Demmou / Franco, 앞의 논문(각주 76), pp. 25-28이 무형자산 금융의 정책 개입 설계에서 대안적 수단과의 비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은지 · 안현철, 앞의 논문(각주 12), 160면도 정책 효과의 체계적 분석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169) 김태형, 앞의 논문(각주 7), 71-110면. 동산과 지식재산을 일괄 등기하는 통합담보등기 체계의 도입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능성·투명성을 높여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제3순위는 성과관리 법적 프레임워크의 도입이다. IP금융 정책의 성과를 본 연구가 제시한 체계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공개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적 재원 투입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IP금융 정책의 품질 향상과 정책 학습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 과제의 이행에 있어서는, 물권법정주의라는 한국 민법의 기본 원칙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면서도, IP자산의 특수성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V장에서 검토한 비교법적 시사점은 이러한 제도 설계의 참조점으로 기능하되, 각국의 법적 장치를 한국 법체계에 맞게 “번역”하는 작업이 필수적임을 재차 강조한다.

## VII. 마치며

본 연구는 IP담보금융의 양적 성장 이면에서 부실이 급증하는 현상의 법적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IP담보대출의 부실 급증이 개별 대출 심사의 실패가 아니라 법적 인프라의 구조적 결함, 특히 ‘분리의 역설’에서 비롯됨을 규명하고, 그 결함이 담보 설정(II)·실행(III)·공적 보완(IV)의 세 국면에서 연쇄적으로 작동함을 보였다. 이에 대한 비교법적 해법(V)으로는 사적 실행의 제도화, 공적 매입기구의 법률상 근거 확보, 포트폴리오·기업 가치 단위의 담보 허용이 확인되었다. 이를 한국법에 구현하기 위한 입법 과제로, VI장에서 IP담보 실행 특별절차, 회수지원기구 법제화, 가치평가 신뢰성 제고, 성과관리 프레임워크의 4대 과제를 단계적 로드맵과 함께 제시하였다.

이상의 분석은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정책 대응의 중

심축은 ‘대출 심사의 강화’에서 ‘담보 실행 법제의 정비’로 전환되어야 한다. 담보로서의 기능은 법률이 부여하면서 그 실행 수단은 봉쇄하는 현행 체계의 모순이 해소되지 않는 한, 부실률의 구조적 하락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회수지원기구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불가피한 장치이나, 법적 근거와 성과 통제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양적 확대는 재정 리스크와 도덕적 해이를 증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매입 기준의 명확화, 수익화 전략의 법제화, 성과 공개의 의무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IP담보금융 정책은 ‘양적 확대’ 중심의 성과 관리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질적·다차원적 성과관리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통계 자료의 제약, 비교법 운영 실태에 대한 실증 분석의 한계, 입법 제안의 계량적 검증 미흡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향후에는 금융감독 통계에 기반한 정밀 분석과 함께, 성향점수매칭(PSM)·이중차분법(DID) 등을 활용한 정책 효과의 실증적 검증이 요구된다. IP담보금융의 성과는 혁신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의 산물이다. 그러나 그 지속가능성은 이를 지탱하는 법적 인프라의 건전성에 달려 있다. 본 연구는 “분리의 역설”이라는 개념을 통해 실행 단계의 구조적 한계를 설명하고, 회수지원기구의 법적 구조를 체계화하며, 우선순위를 갖춘 입법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이 IP담보금융의 법제 개선을 위한 학술적·정책적 논의의 기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 논문최초투고일 : 2026년 3월 1일; 논문심사(수정)일 : 2026년 4월 23일;  
논문게재확정일 : 2026년 4월 23일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1) 단행본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법원행정처, 2020.

조영선, 「지적재산권법」 제6판, 박영사, 2023.

지원림, 「민법강의(제22판)」, 홍문사, 2025

#### 2) 논문

권영준, “국제 동향에 비추어 본 한국 동산채권담보법제”, 법조 제69권 제5호, 2020.

김태형, “지식재산권담보권의 문제와 그 개선방안”,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5권 제1호, 2021.

박유선, “국제개발 협력 측면에서 지식재산(IP)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레임 워크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8권 제3호, 2023.

박재원, “지식재산담보권의 우선권과 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연구 -UNCITRAL 담보거래 입법론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8권 제3호, 2013.

손승우 · 김태원, “지식재산 담보의 범위와 공시제도”, 지식재산연구 제8권 제3호, 2013.

윤종미, “은행권의 지식재산(IP) 담보금융에 관한 리스크 관리”, 경영법률 제33집 제2호, 2023.

이은지 · 안현철,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정책효과 연구: 특허 포트폴리오 기반 지식재산 담보대출 중심으로”, Journal of KIIT 제22권 제8호, 2024.

정창호, “지식재산담보권의 실행과 우선순위에 관한 개선안”, 지식재산연구 제8권 제4호, 2013.

최철, “지식재산담보금융과 신탁구조 활용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제44권 제1호, 2020, 232-253면..

#### 3) 기타

김현아,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 특허청 국외훈련집



- 토보고서, 2020.1.
- 금융감독원, “2024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2025. 3. 25.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94437&menuNo=200218&cl1Cd=&sdate=&edate=&searchCnd=1&searchWrd=&pageIndex=1>>(최종접속 2026. 4. 22.).
-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특허청 고시 제2023-13호, 2023. 7. 4. 시행).
- 서울경제, “IP담보대출 부실률 4%…재산권 매입 늘린 특허청도 ‘진땀’”, 2025. 9. 3. <<https://mv2.sedaily.com/NewsView/2GXRDCQZ1X/GD07>>. (최종접속 2026. 4. 22.).
- 이상욱, “김성원 ‘기술보증기금, 보증사고율 2배…성과 일변도 재검토해야’”, 로이슈(lawissue), 2025. 10. 1.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1001230743141792eef753eb\\_12](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1001230743141792eef753eb_12)>. (최종접속 2026. 4. 22.).
-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2026년 지식재산처 예산 6,308억원 확정”, 2025. 12. 4.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714&aprchId=BUT0000029&sysCd=SCD02>>. (최종접속 2026. 4. 22.).
- 특허청,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취소 고시」, 2023. 6. 27., <<https://www.kipo.go.kr/ko/kpoBultnFileDown.do?ntatcSeq=19704&ntatcAtflSeq=1>> (최종접속 2026. 4. 22.).
- 특허청 보도자료, “지식재산(IP) 금융 10조원 시대 개막”, 2024. 10. 16.
- 특허청 보도자료, “지식재산으로 재도약을 꿈꾸다! 담보 IP ‘매각 후 실시(SLB)’ 지원 기업”, 2025. 1. 16.
- 특허청, “IP담보대출 사업 운영 현황”(특허청 공고 제2024-81호 참조).
- 특허청·금융위원회, “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2018. 12.
- IPDaily, “희생기업 정상화에 ‘담보IP’ 활용… ‘매각 후 실시(SLB)’ 프로그램”, 2025. 1. 17.

## 2. 외국문헌

### 1) 논문

- Akerlof, George A.,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84, No. 3, 1970.

Ciaramella, Laurie / Heller, David / Leitzinger, Leo, “Intellectual Property as Loan Collateral: Evidence from France”, Working Paper, Télécom Paris – Institut Polytechnique de Paris / Max Planck Institute for Innovation and Competition, 2022.

Heller, David / Leitzinger, Leo / Walz, Uwe, “Intellectual Property as Business Loan Collateral: A Taxonomy of Institutional and Economic Determinants”, GRUR International, Vol. 73, Issue 5, 2024.

Hochberg, Yael V. / Serrano, Carlos J. / Ziedonis, Rosemarie H., “Patent Collateral, Investor Commitment, and the Market for Venture Lending”,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130, Issue 1, 2018.

Khanna, Naina, “The Securitization of IP Assets: Issues and Opportun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Vol. 23(2-3), 2018.

Liu, Meijun et al., “Patent Collateralization: The Effect of Policy and Impact on Patenting”, 2022.

Mann, William, “Creditor Rights and Innovation: Evidence from Patent Collateral”,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130, Issue 1, 2018.

Werbin, Barry, “How to Enforce U.S. Security Interests in Trademarks”, INTA Bulletin, Vol. 72, No. 6, Herrick, Feinstein LLP, 2017.

平野聖, “知的財産権の金融担保法上の位置付け”, 川崎医療福祉学会誌 第14巻 第1号, 2004.

### 3) 기타

BBB & UKIPO, Using Intellectual Property to Access Growth Funding, British Business Bank and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18.

Demmou, Lilas / Franco, Guido, Mind the Financing Gap: Enhancing the Contribution of Intangible Assets to Productivity, OECD

-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681, OECD, 2021.
- INTA / Herrick Feinstein LLP, “UCC-based Trademark Security Interest Enforcement”, INTA Report, 2017.
- WIPO, Moving IP Finance from the Margins to the Mainstream, 2025.
- WIPO, Unlocking IP-Backed Financing: Country Perspectives – The United Kingdom’s Journey, 2023.
- WIPO, Country Perspectives: Japan’s Journey, Unlocking IP-backed Financing Series, RN2025-2EN (DOI: 10.34667/tind.58428), 2025.
- WIPO, Country Perspectives: China’s Journey, Unlocking IP-backed Financing Series, 2023.
- WIPO / IPOS, Unlocking IP-Backed Financing: Country Perspectives – Singapore’s Journey, Geneva: WIPO, 2021.

<국문초록>

## IP담보금융의 위험 구조와 법적 과제

김 도 경

2024년 국내 IP금융 잔액이 1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IP담보대출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3년 1.05%에서 2025년 3월 3.95%로 급등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실 급증이 가치평가의 흠결이 아니라 IP담보 실행 법제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됨을 논증하고, 비교법에 근거한 입법론을 제안한다. 첫째, 가치훼손의 원인으로 ‘분리의 역설(paradox of separation)’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IP는 기업의 사업맥락과 결합될 때 가치를 발현하므로, 실행을 위한 분리는 가치 하락을 수반한다. 경매 중심의 민법상 질권 실행 체계는 IP의 비유체성·변동성과 구조적으로 충돌하며, 이는 특허권 질권의 직접 실행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에서 실증된다. 둘째, IP담보 회수지원기구(KIPA-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는 누적 매입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이 1% 미만에 머무른다. 이는 분리의 역설과 IP 유통시장 부재라는 구조적 요인에, 매입가 비공개에서 비롯되는 도덕적 해이와 법률상 근거의 취약성이라는 제도적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이다. 셋째, 미국(UCC Article 9), 영국(부동산담보·영국기업은행), 일본(2024년 기업가치담보권)의 비교법적 검토를 토대로, IP담보 실행 특별절차, 회수지원기구의 법률상 근거 명확화, 성과관리 프레임워크로 구성되는 단계별 입법 로드맵을 제안한다. IP담보대출 부실을 대출 심사의 실패가 아닌 담보법제의 구조적 결함으로 재정의함으로써, 본 연구는 제도 개혁의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주제어】 IP담보금융, 특허권 질권, IP가치평가, 담보 실행, 회수지원기구, 입법론

<Abstract>

## Risk Structure and Legal Challenges of IP-Backed Lending in Korea

Dokyung Kim<sup>\*</sup>

As Korea's outstanding IP-backed lending balance exceeded KRW 10 trillion in 2024, the non-performing loan ratio surged from 1.05% in 2023 to 3.95% in March 2025. This study argues that the surge reflects not valuation failures but structural deficiencies in the legal framework governing IP collateral enforcement, and proposes comparative-law-based legislative reforms.

The study first develops the concept of the 'paradox of separation': because IP derives value from integration with a firm's business operations, its separation for enforcement purposes inevitably destroys that value. The Korean Civil Code's auction-centered enforcement regime structurally conflicts with this nature, as confirmed by the virtual absence of Supreme Court precedent on patent-pledge enforcement.

Second, the study examines Korea's IP Recovery Support Agency (KIPA-Intellectual Discovery), whose recovery rate remains below 1% despite substantial cumulative acquisitions. This outcome reflects both structural factors (the separation paradox, absent secondary IP

---

<sup>\*</sup> Attorney at Law, Jehyun attorneys at law, WIPO Neutral, IP Valuation Expert

market) and institutional factors (moral hazard, opaque pricing, weak statutory foundation).

Drawing on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UCC Article 9), the United Kingdom (floating charge; British Business Bank), and Japan (Enterprise Value Security Right, 2024), the study proposes a phased legislative roadmap comprising special IP enforcement procedures, a statutory basis for the Recovery Support Agency, and a performance-management framework. By reframing IP-backed lending defaults as a structural deficiency in collateral law rather than a credit-assessment failure, this study provides the legal foundation for systemic reform.

**【Key words】** IP-Backed Lending, Patent Pledge, Paradox of Separation, Recovery Support Agency, Private Enforcement